

04

## Focus On Media

최근 범죄 관련 보도와 인격권 문제 :  
3가지 입장과 3가지 쟁점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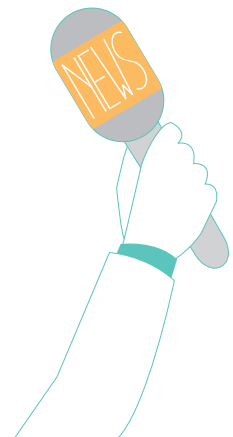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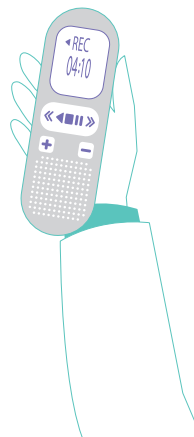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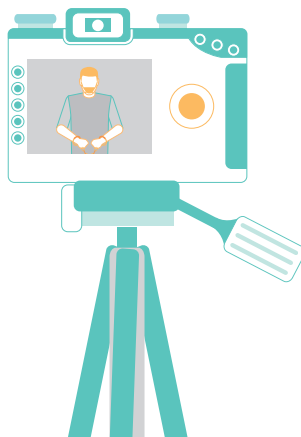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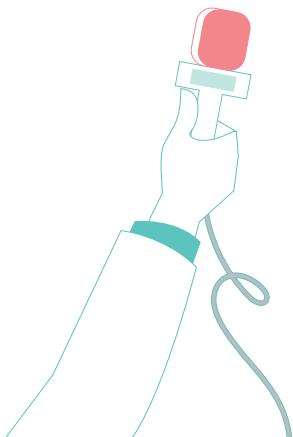
##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

5G와 저널리즘: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한다

62

## 주목할 만한 해외언론법제

일본의 헤이트스피치 규제법에 관한 검토  
-혐한발언·시위를 중심으로-



## 언론중재

2019 Autumn Vol.152

### 인쇄

2019년 9월 26일

### 발행

2019년 9월 30일

### 등록

1981년 10월 14일

### 등록번호

서울중.바 00002

### 발행인

이석형

### 편집인

권오근

### 발행

언론중재위원회(www.pac.or.kr)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 전화

02-397-3044

### 디자인·인쇄

문화공감

### 편집위원

김현귀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원

심우민 경인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정철운 미디어오늘 정치사회부장

\* 본지는 잡지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합니다.

\* 이 책에 게재된 원고의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에 수록된 글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 FOCUS ON MEDIA

최근 범죄 관련 보도와 인격권 문제 :  
3가지 입장과 3가지 쟁점

1. '피의자'의 피의사실 보도와  
무죄추정의 원칙 04

- 원혜옥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공익신고자 신원 공개 논란 속  
'취재원' 보호 20

- 정신교 김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3. 미투 운동 이후의 언론계 성인지  
감수성 고찰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성범죄 보도 32

- 장윤미 언론중재위원/변호사

## 칼럼

말과 사물, 그리고 미디어 44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하여

- 서경주 언론중재위원

##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

### 5G와 저널리즘: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한다

- 조영신 SK 브로드밴드 실장  
조형석 SK 브로드밴드 매니저

50

## 사건 속 법률

### 세월호 참사 5년...재난보도준칙 마련 이후에도 반복되는 문제

- 송중현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56

## 주목할 만한 해외언론법제

### 일본의 헤이트스피치 규제법에 관한 검토

- 혐한발언·시위를 중심으로-  
-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62

## 판례토크

### 뉴스 속의 사진 : 페이스북에 공개된 사진을 허락 없이 보도에 사용할 수 있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나57023 판결  
- 한위수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74

## Journalism & Ethics

### 탈진실 사회와 저널리즘의 역할

- 이재경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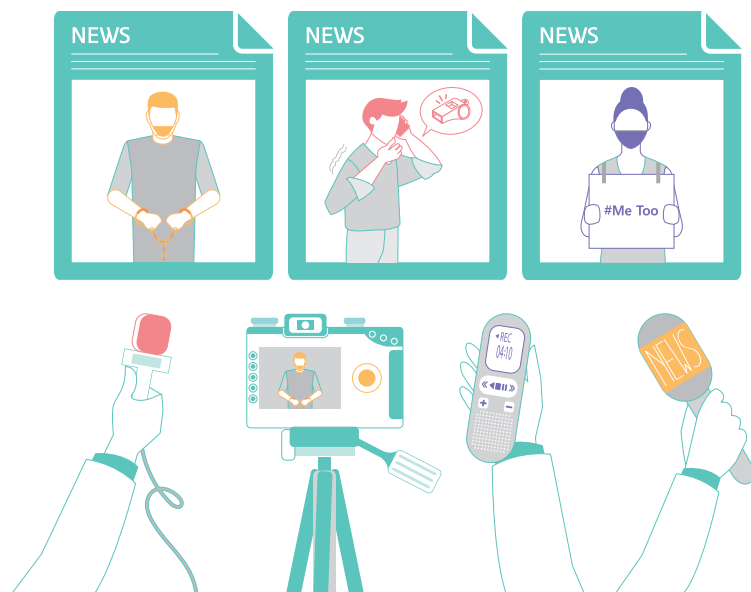
78

## 해외통신원

### 스웨덴의 혐오표현 규제와 위험받는 민주주의

- 김민주 스웨덴 룬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석사과정

82



# 01

---

## ‘피의자’의 피의사실 보도와 무죄추정의 원칙

원혜옥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I. 들어가는 말

최근 경찰청은 법무부에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에 대한 ‘머그샷(mug shot,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 촬영과 함께 머그샷의 공개가 가능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피의자가 긴 머리를 이용해 얼굴을 가릴 경우 신상공개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경찰은 현행법상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피의자 얼굴을 사진 촬영해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해도 되는지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머그샷 도입은 검찰 등 다른 법집행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경찰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법무부 유권해석을 받은 뒤 인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sup>1)</sup> 이러한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여 이규백 의원은 신상공개 제도는 기소 전이라도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강화할 수 있는 이른바 ‘머그샷법’(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안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도 미국처럼 구금과정에서 머그샷을 촬영할 수 있게 돼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이 확실히 보장될 것”이라고 자신했다.<sup>2)</sup>

이와 같이 최근 피의자의 신상공개제도가 다시금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이른바 ‘강호순 사건’ 이후인 2010년 4월에 도입된 신상공개제도에 대해서는 도입 이후부터 수사기관의 피의자 얼굴 공개 결정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비판 및 얼굴 공개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신상공개는 2016년 5월 대부도 토막 살해사건 피의자의 얼굴이 피의자를 검거한 지 1시간 만에 결정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된 것은 연쇄살인사건이라도 피의자가 공개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본 사건의 피의자는 검거된 지 1시간 만에 신속하게 공개되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신상공개를 결정하는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점이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피의사실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발표하고, 언론이 이를 보도하는 형태로 피의사실이 공개된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와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피의자의 인권보장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게 되면 피의사실공표와 신상공개는 모두 금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알 권리를 강조하게 되면 피의사실공표와 신상공개는 모두 허용되어야 한다. 현행법

1) 연합뉴스, 2019. 9. 6.

2) 연합뉴스, 2019. 9. 3.



은 공소제기 전에 피의사실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사안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의사실공표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신상공개제도는 알 권리에 의해 허용하고 있다. 즉, 국민의 알 권리가 피의사실공표죄에서는 정당화사유로 작용하지 않았지만 신상공개제도에서는 정당화사유로 작용하고 있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에 이하에서는 공소제기 전의 피의사실과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알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할 때 어느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II. 피의사실공표죄와 신상공개제도의 법적 근거 및 개념

### 1. 피의사실공표죄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입법화되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부 초안을 심사할 때 주심을 맡았던 엄상섭 의원은 본회의에서 피의사실공표죄의 입법취지가 수사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의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 주된 논거는 무죄추정의 원칙이었다.<sup>3)</sup>

피의사실공표죄의 입법취지는 다음과 같다. ①기소 전에 피의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 피의자 또는 관련자에 의하여 증거 등이 인멸되는 사태를 방지함으로써 국가의 범죄수사기능을 보호한다. ②피의사건에 대한 유·무죄의 성립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결정되며 확

3) 문재완 (2014), 피의사실공표죄의 헌법적 검토, <세계헌법연구>, 제20권 제3호, p.4.

정판결 전에 피의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 피의자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법원의 확정판결 전에 피의사실이 공표됨으로 인한 불이익은 방지되어야 한다.<sup>4)</sup>

현행 형법은 피의사실공표죄를 제126조에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 사문화된 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sup>5)</sup> 사문화된 원인으로는 범죄행위의 주체와 공소제기의 주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기소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지는 언론의 경쟁적 보도로 인하여 피의사실공표를 범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sup>6)</sup>

## 2. 신상공개제도

### (1) 법적 근거

#### 1)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이라 한다)의 입법과정

2009년 특강법이 개정되어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까지 피의자 얼굴 등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는 피의자가 소년인 경우를 제외하고 입법을 통해 규정된 적은 없다. 경찰은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sup>7)</sup>에 따라 경찰청 훈령에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훈령 제461호)을 제정하고,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훈령 제514호)을 제정하여 수사 중이나 호송 중에 피의자의 신상은 물론 피의사실 등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호송규칙 제62조 제8호). 또한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와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의 수사기관이 지득한 피의사실 등 비밀유지에 대한 규정은 수사기관이 기소 전에 피의사실 및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2006. 6. 26. 전면개정된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 역시 제6조에서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제64조 제

4) 문봉규 (2011). 피의사실공표죄의 형사법적 한계와 허용범위. <외법논집>, 제35권 제호, p.169.

5) 김봉수 (2011). 피의사실공표죄(형법 제126조)의 규범적 한계에 관한 고찰. <경찰법연구>, 제9권 제호, p.56.

6) 앞의 김봉수 (2011). p.60 ; 문재완 교수는 이러한 지적이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취하면서, 오히려 일률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더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앞의 문재완 (2014), p.17).

7) ① 경찰관들이 피호송자 호송과정에서 차량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호송차량 내부의 거치대에 수갑을 시감한 채 커튼 등 가림장치 없이 그대로 노출되도록 방치한 것은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다(2005. 6. 27. 04진인3751 결정)

② 교도소 수용자 호송과정에서 수갑과 포승을 하고 수용복을 입은 얼굴이 불특정다수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와 마스크 등 인면을 가릴 수 있는 보호도구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수용자 보호업무를 개선해야 한다(2008. 8. 12. 08진인442 결정)

1항과 제2항에서는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에 수사 중인 사건의 혐의사실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과 수사상황이나 구속영장 등 수사관련 서류 및 증거물도 그 사건의 기소 전에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다만, 제64조, 제65조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언론사의 과다한 취재 경쟁으로 인한 오보의 방지, 범죄로 인한 피해의 방지와 범죄의 예방 등 공익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수사상황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개하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 수사의 효율적 수행 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공개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언론도 이러한 조치에 부응하여 그동안 '인권존중을 위한 사건보도기준'을 만들어 사인(私人)인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등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였다.<sup>8)</sup>



그러나 2004년 유영철, 2006년 정남규와 같은 연쇄살인범 및 김길태, 조두순과 같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들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흉악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자 피의자 신상이 비공개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과 반대의견이 제기되었다. 특히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경찰에 검거되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얼굴사진을 공개하면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정당인가에 대한 찬반 논쟁

8) 이무선 (2010), 강력범죄피의자의 얼굴(신상)공개의 정당성 여부, <법학연구>, 제39집, p.229.

이 크게 확산되었다.<sup>9)</sup> 찬반 양론이 대립되고 있었지만 사회적 여론이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흐르게 됨에 따라 범죄예방차원에서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게 되었다. 이에 경찰도 언론의 얼굴 공개에 대한 여론을 고려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예방 효과, 공익상 이유’라는 필요성에 따라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법률안을 추진하였다. 법무부는 2009년 3월 수사기관이 살인, 미성년자 유괴, 아동 성폭력 강간 등의 중대범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공개를 허용하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동 법안은 2010년 4월 제8조의2를 신설하여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를 입법화하였다.

## 2)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강법은 제8조의2에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법무부는 훈령 제774호로 2010년 4월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하였다. 동 준칙 제23조 제2항은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찰청 부지 내의 청사건물 이외 구역에서 소환, 체포, 구속(구속 전 피의자신문을 위한 호송을 포함한다) 또는 귀가 과정에 한하여 제2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피의자의 얼굴, 실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 논의에 대해서는 정철호 (2012).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법적 고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7호, p.157. 이하 ; 노규호 (2009) 흉악범 얼굴공개의 필요성과 논의점. <수사연구>, 제27권 제3호, p.12. 이하 ; 양의 이무선 (2010), p.231. 이하 참조

#### 4) 신문윤리실천요강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 제6항에 피의사실을 보도하는 경우에는 “경찰 및 검찰 등 수사 기관이 제공하는 피의사실은 진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피고인 또는 피의자 측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조에는 ‘범죄보도와 인권존중’이라는 제목 하에 유죄가 확정되기 전의 형사사건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sup>10)</sup>

#### (2) 신상정보 공개의 사례 및 문제점

신상공개제도가 특강법에 도입된 이후 신상정보가 공개된 흉악범은 모두 22명이며, 2019년에는 장대호를 포함해 4명의 신원이 공개됐다. ‘제주도 전남편 살해사건’의 고유정, 21명의 사상자가 나온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의 안인득, ‘청담동 주식 부자 부모 살인사건’ 김다운 등이다. 그러나 모든 흉악범의 신상이 공개된 것은 아니다.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상공개제도가 신설된 이후 경찰이 신상공개를 검토한 사건은 총 33건이다. 이 중 11건의 피의자 신원은 비공개됐다. 2016년 5월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의자는 정신 질환을 앓는다는 이유로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음에도 신상이 공개된 안인득,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와 비교된다. 일관성 없는 신상공개 결정으로 인해 제도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신상공개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경찰 3명과 외부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의 구성이나 여론의 동향에 따라 공개 여부가 자의적으로 결정된다는 지적이다.<sup>11)</sup> 특히 장대호의 신상공개가 결정되면서, 기준이 모호한 신상공개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다시 커지고 있다. 각 지방경찰청에서 열리는 신상공개위원회는 비슷한 사안을 놓고서도 ‘공개’와 ‘비공개’의 엇갈린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유정과 김다운에게는 ‘범죄의 잔인성과 범죄예방 및 공공의 이익 고려’, 안인득에게는 ‘재

#### 10)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언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의 형사사건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범죄에 연루된 정신이상자와 박약자, 성범죄에 연루된 피해자 및 무관한 가족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①(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존중) 언론인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이 무죄로 추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경칭을 사용하는 등 그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현행범인 경우와 기소 후 피고인에 대한 경칭의 사용 여부는 개별 언론사의 편집정책에 따른다.

②(성범죄와 무관한 가족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성범죄를 보도하는 경우 무관한 가족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된다.

③(미성년피의자 신원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미성년(18세이하)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사진 및 기타 신원자료를 밝혀서는 안된다.

④(피의자 및 참고인 등 촬영 신중) 기자는 형사사건의 피의자, 참고인 및 증인을 촬영하거나 사진 또는 영상을 보도할 때는 최대한 공익과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

11) 매일경제, 2018. 8. 21.



범방지 및 공공의 이익, 정신질환자 범죄이나 범행당시 의사결정능력 고려’ 등이 신상공개 사유로 작용했다. 그러나 비슷한 범죄에 있어서 신상공개위원회는 다른 결정을 내놓기도 하였는데, 2019년 초에 발생한 ‘속초 동거녀 살인사건’, ‘광주 의붓딸 살인사건’ 등의 사건은 여론으로부터 잔혹 범죄라는 지탄을 받았음에도 신상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유정·김다운 사건과 대비되는 결과다. 아울러 2019년 1월 강북삼성병원에서 정신과 의사를 무참히 살해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신상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같은 정신질환자였음에도 신상공개가 결정된 진주 살인사건 용의자 안인득 사건과 비교된다.<sup>12)</sup> ‘신상공개 결정’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신상공개위원회의 공개 기준이 더 명확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 Ⅲ. 피의사실공표죄 및 신상공개에 대한 판례의 견해

#### 1. 피의사실공표죄

대법원이 수사기관에 대해 피의사실공표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해당 검사 혹은 경찰을 처벌하기 위한 형사사건이 아니고 피의사실공표 행위를 원인으로 범죄피의자 혹은 그 부모들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sup>12)</sup> 헤럴드경제, 2019. 8. 21.

인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비록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의 불법성 판단기준이기는 하지만, 동일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더라도 대법원의 판단기준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하는 피의사실공표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의 내용이다.<sup>13)</sup>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발표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적하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현 방법에 대하여도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 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면 담당 검사가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보강수사를 하지 않은 채 참고인들의 불확실한 진술만을 근거로 피의자의 범행동기나 그가 유출한 회사기밀의 내용 및 경쟁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향후 수사확대 방향 등에 관하여 상세히 언급함으로써 마치 피의자의 범행이 확정된 듯한 표현을 사용하여 각 언론사의 기자들을 상대로 언론에 의한 보도를 전제로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 피의사실 공표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13)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9692 판결

## 2. 신상공개제도

헌법재판소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위해서는 공익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법익균형성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피의자의 얼굴이 촬영되고 공개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sup>14)</sup> 아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범죄사실’ 자체가 아닌 그 범죄를 저지른 자에 관한 부분은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예외는 공개수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범죄사실’ 자체가 아닌 그 범죄를 저지른 자에 관한 부분은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예외는 공개수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피청구인은 기자들에게 청구인이 경찰서 내에서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 청구인에 대한 이러한 수사 장면을 공개 및 촬영하게 할 어떠한 공익 목적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촬영허용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모자, 마스크 등으로 피의자의 얼굴을 가리는 등 피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촬영허용행위는 언론 보도를 보다 실감나게 하기 위한 목적 외에 어떠한 공익도 인정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은 피의자로서 얼굴이 공개되어 초상권을 비롯한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받았고, 촬영한 것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범인으로서의 낙인 효과와 그 파급효는 매우 가혹하여 법익균형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촬영허용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 IV. 해외의 입법례

### 1. 미국

미국의 경우 많은 지역에서 경찰은 피의자를 체포하면 피의사실뿐 아니라 얼굴 사진인 머그샷(mug shots)까지도 공개한다. 미국에서는 체포 기록을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할 공적 기록으로 본다. 따라서 법원도 피의사실의 공표 그 자체를 위헌이라고 보지는 않으며, 재판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발언만 규제의 대상으로 한다.

14) 헌재 2014. 3. 27. 2012헌마652

미국연방대법원은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해 공인의 공적 사안에 대한 언론기관의 보도가 실질적인 악의(actual malice)가 없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언론의 면책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언론의 자유는 범죄혐의자로 체포된 자에 대한 보도에도 적용되어, 합리적으로 유죄의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적법한 과정을 통하여 얻은 피의자의 사진 및 신원의 언론보도를 인정하고 있다.<sup>15)</sup>

법무부는 연방검사업무지침(United States Attorney’s Manual)에 피의사실공표 및 신상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 지침은 공판 청구 전인 수사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불가피하게 공표해야 하는 경우를 ①이미 사건내용이 대중에게 상당히 알려진 경우, ②수사 중에 있다는 사실의 공개로 시민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③시민의 안전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공판 청구 전 형사사건의 체포된 피의자에 관해서는 ①피의자의 성명, 연령, 주소, 직업, 결혼 여부, 기타 신상 사항, ②혐의범죄 또는 기소의 대상이 된 범죄, ③담당 수사기관, 체포를 한 기관, 수사의 기간, ④체포된 상황, 즉 체포의 시간과 장소, 피의자의 저항 또는 무기 사용 여부, 사용된 무기가 있을 시 그 종류 등은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 지침은 피의자의 권리, 국민의 알 권리 및 사법정의의 효율적 수행이라는 세 가지 이익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상황에서 피의사실 및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sup>16)</sup>

## 2. 일본

일본의 경우 피의사실공표 행위가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형법 제230조의2<sup>17)</sup> 제2항에 피의사실공표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는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있으며, 전면적인 신상정보의 공개까지 허용된다.

## 3. 독일

독일은 형법 제353조d에서 기소 후 법원심리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이 기소 전의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또한 독일은 동 조항에서 공정한 재판의

15) 강성두 (2010) 범죄피의자의 인권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피의자 신상공개규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민사법연구>, 제18집(2010. 12.), p.380.

16) 앞의 문재완(2014), p.6. ; 앞의 이무선 (2010), p.231.

17) 일본형법 제230조의2 ①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관계되고 이에 대한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위함에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의 진실여부를 판단하여 진실이라는 증명에 있는 때에는 이를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람의 범죄행위 관한 사실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로 간주한다.

보장을 보호법익으로 하면서 피의사실의 정보에 대한 금지가 아닌, 공판절차에서의 문서의 전부 또는 문서의 주요 부분을 원문대로 외부에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피의사실공표죄와는 차이가 있다. 독일에서는 2009년 성범죄자가 자신의 신상공개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아동에 대한 성범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 단순한 성범죄가 문제 된 경우라도 성적 영역의 불가침성으로부터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범행에서 원칙적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보도가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도출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성범죄를 행한 범죄자들은 성범죄로부터 유발된 공공의 정보이익이 충족된다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sup>18)</sup> 고 결정하여 피의사실과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허용하고 있다.



## V. 알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

### 1. 알 권리

알 권리는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수령·수집하거나,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sup>19)</sup> 피의사실공표죄로 제한받는 주된 기본권은 국민의 알 권리이다. 피의사실공표죄는 주권자인 국민이 의사형성이나 여론형성에 필요한 국가기관의 수사 활동 정보에 접근하여 수집·처리하는 것을 금지함

<sup>18)</sup> BVerfG 10. 06. 2009(2 BvR 1107/09)

<sup>19)</sup> 헌법재판소 1991. 5. 13. 90헌마133 결정



으로써 알 권리는 제한한다는 것이다.<sup>20)</sup>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신상공개제도를 정당하게 하는 주된 기본권도 국민의 알 권리이다.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피의 사실도 공표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소제기 전의 범죄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 및 신상정보가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허용되어야 하는가이다. 범죄로부터 안전과 건강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범죄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알 권리가 보장될 필요는 인정된다. 그러나 알 권리 역시 헌법상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생활의 보호 및 인격권 등과 같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계가 지워져야 한다.<sup>21)</sup>

## 2. 무죄추정의 원칙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피의자는 물론 피고인에 대해서도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로 다루어져야 하고 그 불이익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권질서의 중심으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질서 내에서 형벌작용의 필연적인 기속원리가 될 수밖에 없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과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이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

20) 앞의 문재원(2014), p.18.

21) 앞의 정철호 (2012), p.161.

을 죄 있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 법률적·사실적 측면에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피의사실공표죄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범죄유형인 반면에 신상공개 제도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즉, 특강법의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수사기관의 임의적인 처분에 따라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이익한 처우라는 점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 신상공개로 인한 사실상의 불이익은 형벌에 버금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sup>22)</sup>



### 3. 소결

현행법의 모순적 규정의 체계로 인하여 공소제기 전 피의자의 피의사실 및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알 권리 혹은 무죄추정의 원칙 중 어느 하나의 원칙만을 강조하여 그 정당성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헌법적 원칙에 따라 피의사실공표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도 신상공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도 없다. 이에 헌법적 가치를 고려한 절충적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절충적 방안으로는 우선 피의사실 및 피의자의 신상정보공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재판에 실질적인 편견을 줄 수 있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발언을

22) 앞의 정철호 (2012), p.162, 이하 ; 앞의 이무선 (2010), p.234.

금지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sup>23)</sup> 이러한 방안은 피의사실 등의 공개를 알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하자는 것이다. 미국 등의 해외 입법례가 취하고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 및 피의자의 기본권 등을 고려하여 공판 전 단계에서는 피의사실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다만, 피의사실 및 피의자의 신상정보의 공개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그 한계를 명확히 하여 불가피하게 공개하는 상황이라도 피의자의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sup>24)</sup>

어느 견해를 취하든지 피의사실 및 피의자 신상정보의 공개를 전면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은 전 형사절차를 지배하는 기본원칙이므로 후자의 견해를 취하여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의 공표나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예외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공개하는 방안이 더 타당하다고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특강법상의 신상공개제도의 취지에 맞게 경찰청의 신상공개의 기준을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적용하고 신상공개위원회를 공정하고 엄격하게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범위와 시기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피의자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VI. 맺음말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를 고려하여 충실하게 보호되어야 하지만, 알 권리도 법률유보 등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알 권리는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상충할 가능성이 있어 그 적정한 조화가 요구된다.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공적 정보를 입수하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며, 사적인 행복추구권을 가지는 개인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알 권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sup>25)</sup> 따라서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피의사실 및 피의자의 신상정보는 사회질서의 회복과 범죄의 예방이라는 목적 달성에 적합한 사실에 국한하여야 할 것이다.

피의사실 등의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은 피의자가 무죄추정을 받는다는 것을 존중해 유죄를 단정하는 듯한 보도를 해서는 안 되며, 실명과 얼굴 공개는 피의자를 상대로 한 분풀이가 아니라 오로지 범죄와 수사상황에 대한 충실한 보도

23) 앞의 문재완(2014), p.21.

24) 앞의 김봉수 (2011), p.62. 이하 참조

25) 앞의 정철호 (2012), p.161.

의 일환이 되어야 한다.<sup>26)</sup> 대법원도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나,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여<sup>27)</sup> 피의사실을 보도하는 경우에도 피의자 신상정보의 공개는 필요불가결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참고문헌**

- 1) 강성두 (2010). 범죄피의자의 인권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피의자 신상공개규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민사법연구>, 제18집 (2010. 12).
- 2) 김봉수 (2011). 피의사실공표죄(형법 제126조의 규범적 한계에 관한 고찰. <경찰법연구>, 제9권 제1호.
- 3) 노규호 (2009). 흉악범 얼굴공개 필요성과 논의점. <수사연구>, 제27권 제3호.
- 4) 문봉규 (2011). 피의사실공표죄의 형사법적 한계와 허용범위. <외법논집>, 제35권 제1호.
- 5) 문재완 (2014). 피의사실공표죄의 헌법적 검토. <세계헌법연구>, 제20권 제3호.
- 6) 심석태 (2016). 얼굴 공개 논란 불붙이는 언론의 선정적 보도. <신문과 방송>, 2016년 8월호.
- 7) 이무선 (2010). 강력범죄피의자의 얼굴(신상)공개의 정당성 여부. <법학연구>, 제39집.
- 8) 정철호 (2012).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법적 고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7호.

26) 심석태 (2016). 얼굴 공개 논란 불붙이는 언론의 선정적 보도. <신문과 방송>, 2016년 8월호, p.48. 이하

27)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7257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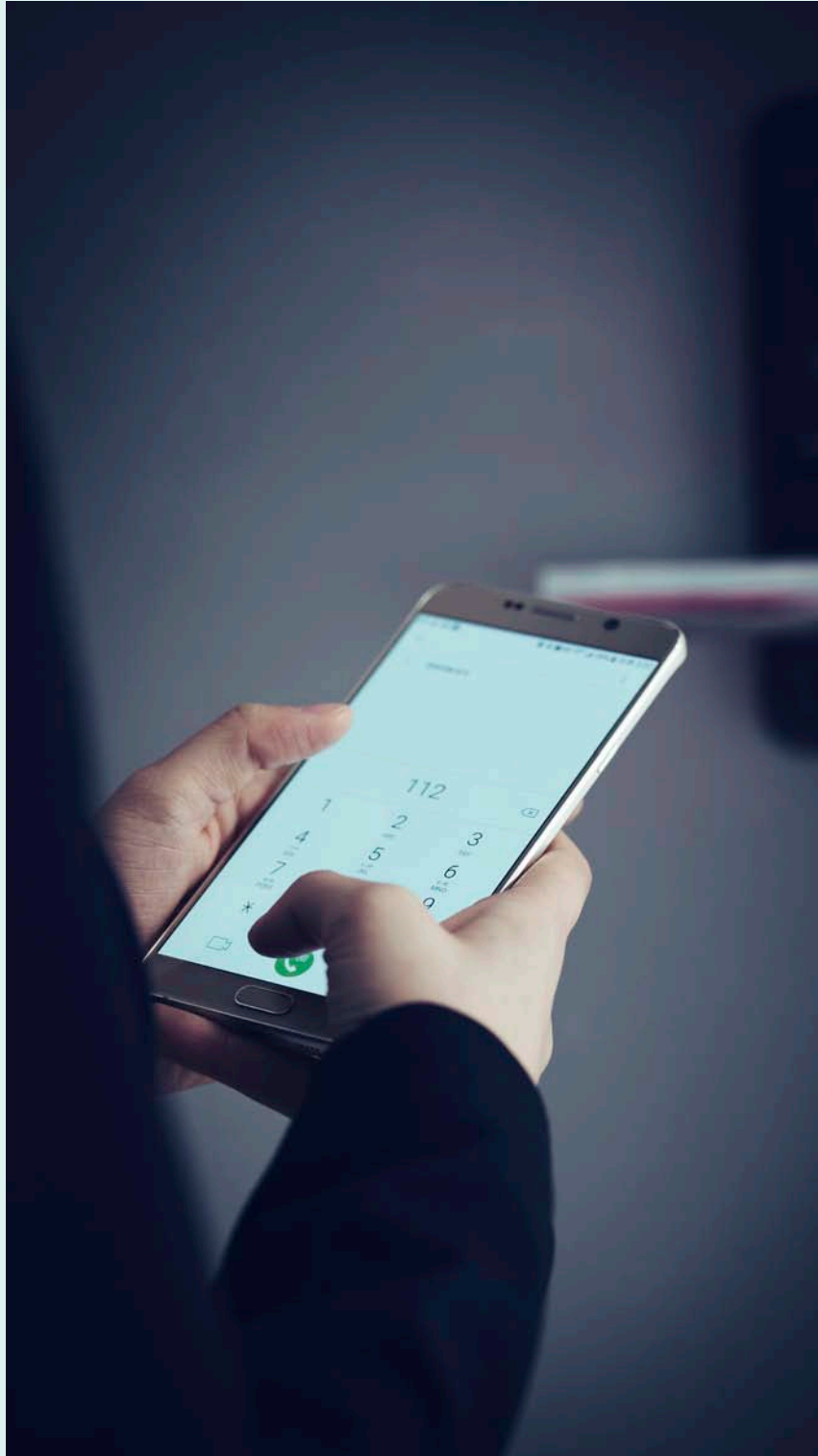
# 02

---

## 공익신고자 신원 공개 논란 속 '취재원' 보호

정신교 김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 I. 들어가며

2019년 6월 국내 유명 연예기획사(YG, 이하에서는 'YG'로 약칭)와 경찰의 유착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 공익신고서를 제출한 가수 연습생 출신 한 모씨의 실명이 특정 언론을 통해 밝혀지면서 공익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음으로 인해 공익신고자의 인권과 신변안전이 중대한 위협에 처해졌다.<sup>1)</sup>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한 모씨는 2016년 자신의 마약 관련 피의자 신문조사에서 YG소속 가수 김 모씨가 마약을 구해 달라고 해서 구해줬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피의자 신문조사에 가수 김 모씨의 관련 기록이 없어졌으며 진술 당시 김 모씨의 마약 관련 내용을 충분히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지문 날인을 위해 조서를 보니 김 모씨의 관련 내용은 사라져 있었다고 밝히며 경찰과 YG와의 유착을 의심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라는 것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알려주거나 공개 혹은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제1항, 제2항).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 그뿐만 아니라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취재원의 안전이 위협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5조 1항). 특히 범죄관련 보도는 제보자의 신상이 공개됨으로 인해 제보자의 2차 피해가능성이 있으므로 제보자의 신상에 대해서는 매우 철저히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1) 소봄이 (2019, 6, 14). "비아이 마약 끝까지 말려...사건 핵심은 '양현석' 한서희가 전한 심경. <세계일보>. URL: <http://www.segye.com/newsView/20190614502974?OutUrl=daum>



언론중재위원회 역시 최근 언론사가 공익신고자의 실명을 공개한 경우, 또는 비실명보도를 하였더라도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경우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느끼고, 해당 인건을 시정권고소위원회에 상정했다. 시정권고소위원회는 해당 유형의 보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1항 및 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공익신고자 보호가 소홀히 취급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심의 대상인 2,658개 매체에 전달했다. 이후 언론중재위원회는 기존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8조(부패행위 보도)를 개정(2019. 8. 21.)하여 공익신고자, 부패행위신고자, 범죄신고자 등을 포괄하여 보호할 수 있는 신고자 보호 조항<sup>2)</sup>을 마련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에 대해 공격적인 침해행위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한 신고(고소, 고발 포함)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종래에는 취재원 보호와 관련하여 취재한 정보가 왜 보호되어야 하는지가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현재는 취재원 보호를 위한 언론인의 특권의 인정여부 문제, 범죄와 관련한 정보원이 공개되

2)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시정권고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언론 보도가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해 2019. 8. 21. 개정된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8조는 다음과 같다.

제8조(신고자등 보호) ① 언론은 다음 각 호의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2. 부패행위신고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
3.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진정(陳情)·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

② 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정보제공자를 확인하기 위해 언론사에 대한 강제수사가 허용되는가에 대한 문제 등이다. 지금도 이와 같은 문제는 취재원 보호에 관한 주요한 논제이다.

## II. 취재원 보호에 대한 논의

### 1. 언론의 법적 책임

#### 1) 언론 보도와 명예훼손 법리

취재원<sup>3)</sup> 보호권이 문제되는 경우는 언론 보도로 인하여 언론사나 기자에 대해 명예훼손과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이다.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형법 제307조)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형법 제309조)를 처벌하고 있다. 민사소송의 경우 보도로 인해 개인의 법익이 침해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이 경우 민법 제750조 이하 규정 및 언론중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i)침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ii)침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iii)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 (iv)침해행위의 위법성 등이 명예훼손 책임 성립을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언론 보도는 일정 부분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로 구성된다. 즉 기사 작성, 보도하는 행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침해 행위가 될 수 있고, 보도가 100% 정확하지 않은 이상 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

이 경우 형법 제310조는 “언론·출판을 통한 사실적으로 인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그것이 공익에 부합하고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고,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하여 처벌하지 않는다.<sup>4)</sup> 즉 보도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 할 경우에도 그 보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 2) 취재원 공개와 법적 책임

언론사나 기자가 명예훼손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언론보도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으로 보도 내용이 진실한 경우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언론사 입장에서 보도된

3) 취재원이란 뉴스를 취재하는 언론출판 기자들에게 뉴스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정보원으로, 협의로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뜻하며, 광의로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뿐만 아니라 집필자, 원고의 제공자, 투고자 등을 포함한다. 즉, 취재원은 기자가 취재하려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인적 취재원과 비인적 취재원으로 구별할 수 있다. 전자는 취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뜻하고, 후자는 예컨대 재난현장 등과 같이 그 사건이 발생한 현장을 뜻한다(이희훈 (2008). 취재원 비닉권과 취재원 보호입법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 제18권 제4호.)

4)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문서 등이 존재한다면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보도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으나, 의혹보도 또는 범죄보도의 경우에는 취재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언론사가 보도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취재원을 공개하는 것이고 상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또한 취재원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이다. 만약 언론이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해 취재원 공개를 거부한다면 그 보도는 허위 보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언론사 혹은 기자는 민사상 패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언론은 취재원을 공개해 민·형사상 책임에서 벗어날 것인지 아니면 취재원을 보호하고 법적 책임을 질 것인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취재원 보호가 문제되는 또 다른 경우는 수사기관이 언론 또는 기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다. 취재원 보호를 명문화한 법적 규정이 없는 공백 상태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수사기관의 언론사 압수·수색이 여러 차례 시도되었다. 검찰은 2003년 SBS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행했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 고위 공직자의 향응접대과정이 담긴 영상 녹화물을 찾기 위해 SBS 본사에서 영장을 집행했고, SBS는 취재원 보호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제출을 거부했다. 2007년에는 신동아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 당시 검찰은 기자의 e-메일을 확보하려 했고, 신동아 측은 범죄혐의 자체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압수·수색은 위법하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2009년에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한 방송사와 제작진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사정기관이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언론사와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통해 압력을 가하는 것은 명백하게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압수를 거부할 권리를 지닌 자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이다. 이들은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보관하는 물건인 경우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 또는 기자의 경우는 열거된 직종에 해당하지 않아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는 없다. 수사기관 혹은 법원의 법집행에 대한 대가는 형사처벌이다. 합법적인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압수·수색의 문제에서도 언론은 취재원을 보호할 것인지 공무집행방해의 죄책을 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 2. 취재원 보호의 역사

취재원 보호의 역사는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 주 헌법과 법률 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표현의 자유와 함께 논의되어 왔으며 수정헌법 제1조는 언론인이 취재원을 밝히거나 증언해야 하는 강제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것을 언론인의 특권으로 보았다.

이처럼 언론인의 특권은 수정헌법 제1조에서 정부가 잘못하거나 행정의 부적절·비효율적이고 은밀한 작용에 관한 정보를 누설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sup>5)</sup> 미국 대다수의 주들은 언론인의 특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존재한다. 그러나 아직 연방차원의 입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독일의 경우 취재원 보호는 신문의 자유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1877년의 독일제국형 사소송법(Reichsstrafprozeßordnung)이나 1874년 독일제국신문법(Reichspressgesetz)에서 증언거부권과 관련된 입법의 시도가 있었으나 본격적인 논의는 1926년 바이마르공화국 형 사소송법 제53조에서 처음으로 인정되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증언거부권의 내용에 있어서 언론인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었다. 1945년 바이에른 주와 헤센 주는 증언거부권을 규정한 주 신문법을 시행하였고 독일 연방차원에서의 증언거부권은 1950년 연방형사소송법 제53조 제1항 제4호와 1953년 연방형사소송법 제5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서 인정되었다.<sup>6)</sup>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 12월에 제정된 언론기본법에 의해 취재원 보호를 명문화하였다. 이 법 제8조 제1항은 “언론인은 공표 사항의 제보자 등의 신원이나 공표 내용의 기초가 된 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언론인의 진술거부권을 보장하였다. 또한 제8조 제2항은 “기사 내용에 기초가 된 사실을 확인 또는 수사할 목적으로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1987년 ‘언론기본법’이 폐지되면서 취재원 보호와 관련된 규정도 삭제되었다. ‘언론기본법’이 폐지되면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다른 규정들은 정기간행물법, 신문법, 방송법 등으로 분리, 흡수됐지만, 취재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아직까지도 입법적 공백으로 남아 있다. 즉 ‘언론기본법’이 폐지되면서 취재원 보호 조항이 현행법에서 사라졌고,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아직까지 취재원 보호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4월 17일 취재원 보호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폐기되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언론사에 대한 강제수사의 제한과 취재원에 대한 보호, 그것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실에서 작성한 내부 문건이 언론사에 의해 보도되자, 검찰은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압수·수색하고 통신내역을 조회하는 등 취재원에 대한 파악에 주력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취재원 보호 법안은 공익제보자의 익명 보호, 보도의 기초가 된 사실을 확인하거나 수사목적의 취재원에 대한 강제수사의 금지를 그 내용으로 한다. 또한 보호의 범위를 법원이나 국회에서의 증언거부도 규정하고 있다.

5) Amanda A. Konarski, The reporter's privilege is essential to checks and balances being accessible to the American Electorate, 11 Seton Hall Circuit Rev, 258, 2014, p. 275.

6) Martin Löffler/Reinhart Ricker, Handbuch des Presserechts, C. H. BECK, 2005, S. 200-202.



### 3. 미국과 독일의 취재원보호법

#### 1) 미국

미국은 1896년 메릴랜드 주에서 최초로 취재원보호법인 일명 방패법(Shield Law)이 제정되었고, 현재 40개 주에서 언론인의 취재원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취재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다.<sup>7)</sup>

이 법의 현대적 해석은 1972년 미국 연방 대법원이 판시한 ‘브랜즈버그(Branzburg) 대 헤이스(Hayes)사건에서 비롯됐다.<sup>8)</sup> 이 사건의 발단은 미국 켄터키 주의 루이빌쿠리어 저널의 폴 브랜즈버그 기자가 1969년 두 명의 젊은이가 마리화나에서 헤시시를 제조하는 광경을 목격하고 작성한 기사를 보도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켄터키 법원과 대배심원은 브랜즈버그 기사를 소환해 취재원이었던 두 젊은이들의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브랜즈버그 기자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취재원을 밝히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은 연방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언론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을 강요받는 것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고 있는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기자들은 취재과정에서 취재원 보호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재원을 밝히게 되면 수정헌법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연방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언론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취재원과 취재

7) 이규호 (2012), 기자의 취재원 보호와 증언거부권. <민사소송>, 제16권 제2호, p.70.

8) Branzburg v. Hayes, 408 U.S. 665, 92 S.Ct. 2646, 33 L.Ed.2d 626 (1972).

물의 보호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예외적으로 범죄와 명백하게 관련된 정보이고, 그 정보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만큼 중요하고 또한 그 정보가 사회적 이익에 압도적일 때에 한하여 취재원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결국 브랜즈버그 사건 이후, 미국 법원들은 기사가 취재원의 관련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권리를 제한적으로 승인하고 있다. 이 사건 판결은 미국 미디어법의 역사에 가장 크게 기여한 판결로 남아있다. 해당 사안에서 언론사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간 취재원에 대한 기사의 증언거부권을 인정하는 주요한 판례로 인용되고 있다.

〈표1〉 미국의 취재원 보호법 요약

구분	언론인 증언거부권
수정헌법 제1조에서의 보호	‘브랜즈버그(Branzburg) 대 헤이스(Hayes)사건에서 증언거부권을 부인하였으나 하급법원들의 재해석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연방(federal) 법률에서의 보호	없음
주(state) 법률에서의 보호	방패법(Shield Law)이 1896년 메릴랜드 주가 최초로 제정하였고 현재 40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음

## 2) 독일

독일은 민사소송법상 기사의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이 법에 의하면 “정기간행물,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을 제작하거나 또는 방영함에 있어서 전문가로서 협력하거나 협력했던 자”의 증언이 정기간행물 또는 방송과정에서 진행된 것이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을(독일 민사소송법 제383조 제1항 제5호)<sup>9)</sup> 뿐만 아니라 보도되지 않은 정보의 경우에도 해당 정보가 유출되면 정보 제공자의 신원이 밝혀질 수 있는 경우 기사화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언론사나 기사가 취재원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증언거부권을 독일기본법과 민사·형사소송법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언론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다른 직업군 종사자의 증언거부권보다 언론인의 증언거부권을 더욱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 예컨대 의사·변호사 등에 대해 비밀주체가 비밀을 해제한 경우에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독일 형사소송법 제53조 제2항). 그러나 언론인의 증언거부권은 이러한 규정이 없다. 이는 언론인의 증언거부권에 있어 언론의 자유와 결부하

9) 김민정 (2015). 취재원보호법 도입의 필요성과 쟁점. 〈언론과 법〉, 제14권 제2호, p.138.

여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즉, 취재원의 비밀보장이 담보될 수 있을 때 언론기관이나 언론 종사자에게 취재원이 정보를 제공할 것이고 더 나아가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언론인의 증거거부권은 개인의 증거거부권을 보호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공적인 의사형성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요소이고 자유언론제도는 그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 III. 취재원 보호의 입법적 노력과 방향

#### 1. 취재원 보호 가이드라인

취재원의 보호는 법의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되어야 하며 언론인의 취재원 보호에 대한 특권의 인정도 중요하다. 취재원의 보호는 언론인의 의무이기도 하다. 언론인의 최고의 가치는 진실을 알리는 것이다. 이는 일반국민에 대한 것이고 저널리즘은 이러한 진실에 대한 확신이 그 본질이다.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언론인은 보도와 관련하여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전문가로서 언론인의 양심과 의무가 전제된다면 취재원에 대한 보호는 당연한 가치일 것이다. 입법기관이 취재원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형사사법기관은 입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고려한 취재원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범죄 사건만을 특화한 취재원보호준칙은 없다. 각 방송사는 방송사 심의규정, 방송보도 심의규정 등을 두고 있다. KBS의 경우도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범죄보도의 원칙과 주의사항이 정리되어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범행을 미화하거나 모방범죄를 유발하지 말 것,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 것, 범죄 전과나 시효만료된 사건은 신중히 취급할 것 등을 적시하고 있다. 영국 공영방송 BBC의 범죄보도 가이드라인에는 범죄를 고무유발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의 방영을 금지할 것, 범죄 수법에 대한 상세한 묘사나 시연은 불법행위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명백히 편집할 것 등의 내용이 있다.

미국의 경우 1970년 이후 언론인을 소환할 경우 법무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이를 준수하고 있다. 미국 연방규정(28 Code of Federal Regulations)은 취재원 보호를 위한 지침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우리 사법행정기관이 고려해 볼 수 있는 제도이다.<sup>10)</sup>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보면 언론인에 대한 소환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사안별 검토가 원칙이며 정보의 이익과 상당한 법집행 사이의 공적이익을衡量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

10) 조재현 (2018). 공정보도를 위한 취재원보호의 입법방향. <한국부패학회보>, 제23권 제2호, p.89.

다. 이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으로 언론인을 소환할 경우 그 전에 다른 방법에 의한 정보취득을 먼저 고려하고, 언론사, 대배심, 법원 등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하도록 요구한다.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내용은 첫째, 언론의 자유와 관련하여 민·형사 사건 뉴스정보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어떠한 법 적용으로부터 언론사의 구성원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언론인으로부터의 정보 요구는 국가안전보장, 공익, 언론의 자유 등 핵심적 가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사법기관이 언론인을 소환할 경우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i)언론인의 정보수집 또는 과정에서 범죄와 관련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은 그러한 위반사실의 여부와 함께 관련 사실을 모두 제시해야 할 것, (ii)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범죄를 유발한 공적인 정보 또는 언론을 통하지 않는 출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져야 하며, 그러한 정보가 수사기관의 조사에 본질적으로 필수적이어야 할 것, (iii) 소환장은 비본질적이고 사소한 것이거나 추측에 의한 정보를 토대로 하여서는 안 되며, 이는 민사사건에서도 동일함. (iv)소환에 있어서 국가안보의 위협성,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협성 등과 같은 필요성이 없다면 언론인과 협상을 고려해야 하며, 특수한 경우에만 조사나 기소의 경우 이 사실을 설명할 것, (v)발부된 소환장은 보도된 정보의 정확성, 정보의 확인에 제한될 것, (vi)소환장의 발부는 정보수집활동을 방해하면 안 되며, 직접적으로 정보와 관련된 자료만을 합리적인 시간 등을 지켜서 발부되어야 하고 광범위한 자료의 제출은 금지됨.

## 2. 취재원 보호의 입법방안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는 언론자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언론인의 취재원 보호를 위한 특권' 또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취재원보호법이 외형적으로는 기자들의 취재와 보도의 자유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법안의 진정한 역할이 취재원이나 제보자들의 보호를 통해 내부 고발자가 정부나 사기업 분야의 범죄나 비리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보자나 취재원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정부와 기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한 정보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취재원과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 취재원보호법은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언론의 취재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왜냐하면, 정부와 권력기관에 대한 언론의 취재와 프로그램 제작 활동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면 언론의 감시기능은 약화되고, 이는 결국 국민의 알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권력기관에 대

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취재원 보호를 위한 법률의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취재원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할까? 취재원보호법 제정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취재원보호법에는 누구든지 언론사나 기자에게 언론의 자유와 직업윤리에 반하여 취재원을 공개하도록 강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언론보도로 인해 제보자가 소속기관이나 조직에 의해 피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취재원보호법은 정부가 언론사나 기자들이 취재원과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호할 있도록 보장하고, 언론보도로 인해 취재원이나 제보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취재원보호법은 수사기관이 언론사나 기자를 대상으로 취재원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수사를 하거나, 보도내용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목적으로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도록 금지하여야 한다. 넷째, 취재원보호법은 언론사나 기자가 제보자 또는 취재원과 관련된 정보와 언론보도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하여 법원 및 국회에서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수사기관이 범죄수사와 관련해 기자나 언론사에게 취재원이나 제보자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요구가 필요할 때는 수사기관이 취재원이나 제보자와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기 전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하고,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정보가 범죄사건의 수사와 관련이 있음과 동시에 매우 중요하고, 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인한 공익이 취재원 보호를 위한 공익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입증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미국 검찰은 취재원 보호와 관련된 네 가지 수사 지침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수사의 출발점을 마련하기 위해 기자에게 자료를 요청해선 안 된다. 둘째, 수사의 결정적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아닐 경우 취재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선 안 된다. 셋째, 수사기 그 증거만을 가지고 이뤄질 경우 자료를 요구해선 안 된다. 넷째, 기자에게 제공받지 않고 다른 데서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료를 요청해선 안 된다. 우리나라 수사 기관들도 언론사나 기자들을 대상으로 취재원이나 제보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이러한 미국 검찰의 수사 지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 IV. 나가며

취재원 보호는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취재원 보호 없이는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도 기대할 수 없다. 언론인의 양심과 직업적 의무가 전제된다면 취재원의 보호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된다. 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 취재원 보호는 자유로운 언론 취재를 보장하

며 언론을 통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권력에 대한 감시와 국민의 알 권리의 충족으로 인한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취재원 보호라는 전제에서 좀 더 나아가 취재원 보호의 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도 있다. 이는 취재원 보호의 범위를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언론인에 한정하지 않고 자유로운 언론 과정에서의 폭넓은 보호를 의미한다. 물론 이와 같은 취재원 보호 확대는 좀 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취재원 보호는 입법적 방안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는 잠재적 정보 제공자와 언론인 간에 그들의 언론과정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익명보도의 남발, 정파성, 선정성 등의 문제를 보인 한국 언론이 과연 취재원 보호를 위한 법률로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비판도 없지 않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취재원 보호에 대한 입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통하여 사법행정기관은 사법행정에 있어서 취재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미국 법무부의 가이드라인은 법집행에서의 취재원 보호를 위한 일정한 지침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1) 김민정 (2015). 취재원보호법 도입의 필요성과 쟁점. <언론과 법>, 제14권 제2호.
- 2) 이규호 (2012). 기자의 취재원 보호와 증거거부권. <민사소송>, 제16권 제2호.
- 3) 이희훈 (2008). 취재원 비닉권과 취재원 보호입법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 제18권 제4호.
- 4) 조재현 (2018). 공정보도를 위한 취재원보호의 입법방향. <한국부패학회보>, 제23권 제2호.
- 5)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 6)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 7) 소불이 (2019. 6. 14). “비아이 마약 끝까지 말려…사건 핵심은 ‘양현석’” 한서희가 전한 심경. <세계일보>. URL: <http://www.segye.com/news/view/20190614502974?OutUrl=daum>
- 8) Amanda A. Konarski, The reporter's privilege is essential to checks and balances being accessible to the American Electorate, 11 Seton Hall Circuit Rev. 258, 2014.
- 9) Branzburg v. Hayes, 408 U.S. 665, 92 S.Ct. 2646, 33 L.Ed.2d 626, 1972.
- 10) Martin Löffler/Reinhard Ricker, Handbuch des Presserechts, C. H. BECK, 2005.

# 03

## 미투 운동 이후의 언론계 성인지 감수성 고찰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성범죄 보도

장윤미 언론중재위원/변호사



## I. 들어가며

2018년 1월 29일 서지현 검사가 검찰내부 통신망에 자신의 성추행 피해사실을 공론화하면서 우리 사회 미투 운동이 촉발되었다. 이후 미투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그동안 숨죽여 왔던 많은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지목하며 용기 있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렸다. 미투 피해자들의 이런 행동에 ‘용기’라는 단어를 붙인 것은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불평등한 권력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는 순간부터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피해자가 폭로 이후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피해사실에 대한 검증을 요구받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외부에 알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기억 속에서 되살리고, 복기하는 고통을 감내해야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미투 운동과 관련한 언론보도(이하 ‘미투 보도’) 속에서 이러한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을 배려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많은 언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였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이다.<sup>1)</sup> 이러한 미투 보도에서 계속 제기되어 온 문제점은 성인지 감수성의 결여, 피해자에 대한 몰이해로 요약된다.

이 글에서는 먼저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을 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성인지 감수성의 관점에서 미투 보도의 문제점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미투 보도의 문제점은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 권고의 대상이 되었던 기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이후 언론의 자정 움직임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 II.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 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1. 대법원 판결을 통해 본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은 보통 사회학적 개념이지 법적인 개념으로 인식되지 않는데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이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범죄 관련 판결을 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고 있다. 판결에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하여 화제가 되었던 것은 2018년 모 대학교수의 학생 성희롱 사건에서였는데 당시 대법원 판결의 판시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sup>2)</sup>

1) 민주언론시민연합 (2018, 2, 26). 언론은 정말 미투 운동을 보도할 준비가 되었을까. <민언련의 방송뉴스 비평>. 등을 참조.

2) 진명선 (2019, 7, 19). ‘성인지 감수성’은 어떻게 무고 누명을 벗겼나. <한겨레21>. URL: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352.html](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352.html) 참조.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성인지 감수성 적용의 근거법률로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을 적시하였는데 위 법조항은 “국가기관 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다소 선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뿐 위 규정에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 자체는 등장하지 않는다. 때문에 대법원이 「양성평등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매우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판결에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 2. 안희정 전 지사 판결 등 각급 법원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위 대법원 판결 이후 최근 다시 성인지 감수성 개념이 공론화된 것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1심이 피해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부분을 문제 삼았고, “법원 판결은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면서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서울고등법원 2019. 2. 1. 선고 2018노2354 판결)<sup>3)</sup>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의 형사판결에서 2018. 8. 30.~2019. 8. 30.까지 1년간 ‘성인지 감수성’이 언급된 경우는 총 32건으로 집계되는데<sup>4)</sup> 대부분이 안희정 전 지사의 판결과 같이 피해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데 있어 법원이 신중하여야 한다는 맥락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때 법원에서 판시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하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은 ①성폭력 피해자의 관점에서 해당 사건을 바라보고 ②사건이 발생한 맥락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면밀히 살펴야 하며 ③성폭력 피해자의 범죄 피해 이후 행위양태가 피해자별로, 피해자가 처한 상황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④소위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여 사건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성인지 감수성의 핵심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이해’에 있다.

### Ⅲ. 미투 관련 언론보도의 침해유형

성인지 감수성의 잣대 위에서 미투 운동 이후 관련 보도들을 분석하면 어떨까. 여기에 답이 될 만한 미투 피해자의 언급이 있다. 이운택 전 연희단체거리 예술감독의 성추행을 처음 폭로했던 김수희 씨는 2018년 2월 자신의 SNS에 기자들을 향해 “용기 내서 폭로한 당사자가 당신의 기사 한 줄에 전화 한 통에 다시 상처받고 있습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렸는데, 위 질문에 대한 피해자의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이 SNS 글을 보면 미투 피

3) 해당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4) 법원판결서 열람 사이트 참조, URL :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finalruling/peruse/peruse\\_status.jsp](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finalruling/peruse/peruse_status.jsp)

해자들이 언론 기사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충분히 짐작하게 한다.

한국기자협회가 지난 2014년 여성가족부와 함께 만든 '성폭력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은 성폭력 보도시 피해자 보호를 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기는 하나,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이해 측면에서 미투 운동 이후 관련 기사들을 평가하면 성인지 감수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고 볼 수밖에 없다. 이하 구체적 기사들을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시정권고소위원회의 미투 보도 시정권고 분석

서지현 검사가 검찰내부 통신망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폭로한 것은 2018년 1월 29일로 이때 부터 우리 사회 미투 운동이 본격화되었고, 그 직후부터 지금까지 미투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미투 운동이 본격화된 직후부터 미투 보도의 성인지 감수성 결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2년 가까이 지난 지금 상황은 나아졌을까.

미투 운동 이후 2년 가까이 지난 현 시점의 미투 보도들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비교적 최근인 2019년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간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시정권고소위원회의 회의 자료를 토대로 시정권고를 받은 미투 운동 관련 기사들을 검토하려고 한다. 위 기간 동안 시정권고를 받은 기사들을 유형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미투 보도의 침해유형은 크게 ▲'성폭력 피해자 부각' ▲'성폭력 피해자 사생활 공개'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 관련 선정적 묘사' ▲'성폭력 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 이렇게 4가지로 나뉘는데 언론중재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48건의 미투 보도 가운데 가장 많은 침해유형은 '성폭력 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였다(26건).

성폭력 가해자의 범행수법을 묘사한 26건의 기사 중 대부분이(23건) 성폭력 가해자의 성



적 발언을 자세하게 보도하고, 이를 기사의 제목으로까지 사용한 사례였다. 다른 2건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댓글을 그대로 기사화하며 댓글 내용을 여과 없이 제목으로 사용한 경우였다.

성폭력 가해자의 범행수법을 묘사한 것 다음으로 많이 지적된 침해유형은 성폭력 피해자 부각(15건)이었고,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 관련 선정적 묘사(5건), 성폭력 피해자 사생활 공개(1건) 순이었다.<sup>5)</sup> 성폭력 피해자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기사의 침해유형이 피해자 부각, 피해자 사생활의 선정적 묘사, 피해자 사생활 공개 등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위 3가지 유형은 전부 '성폭력 피해자와 관련된 부적절한 보도를 분류한 것이다. 위 3가지 유형에 해당하여 시정권고를 받은 기사는 총 21건으로 가해자의 범행수법을 묘사한 경우(26건)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성폭력 피해자를 부각한 기사 15건은 전부 성폭력 피해자의 SNS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대로 게재한 경우였다. 이 밖에도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을 선정적으로 묘사해 시정권고를 받은 기사는 5건이었는데,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지인과 나눈 사적대화 내용을 기사제목으로 쓰거나(4건), 위 사적대화 내용에 대한 댓글을 기사제목으로 사용해 과도하게 선정적인 묘사를 한 경우(1건)였다.

〈표1〉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2019. 7. 31. 기준)

침해유형	구분	건수
성폭력 피해자 부각	성폭력 피해자의 SNS 사진을 동의 없이 공개하여 신원을 부각함	15
성폭력 피해자 사생활 공개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된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정신과 및 산부인과 진단서 실물 공개	1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 선정적 묘사 등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지인과 나눈 사적대화내용을 기사제목으로 쓰면서 과도하게 선정적으로 묘사	4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지인과 나눈 사적대화내용에 대한 댓글을 기사제목으로 쓰면서 선정적으로 묘사	1
성폭력 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댓글을 그대로 게재하고 기사 제목으로 사용	2
	성폭력 가해자의 성적 발언을 자세히 보도하고, 이를 제목으로 사용	23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상태와 가해자의 범행수법을 포함한 범행 장면에 대해 과도하게 묘사	1
성폭력 피해자 부각/성폭력 가해자 범행 수법 등 묘사	피해자의 초상을 공개하여 신원을 부각하고 피해자의 폭로 게시글 전문 게재	1
계		48

5) 나머지 1건은 성폭력 피해자 부각 및 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 이 두 가지 침해유형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였다.

시정권고를 받은 매체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인터넷신문(42건), 뉴스통신(4건), 방송(1건), 지역일간지(1건) 순이었다. 인터넷신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신속성을 주된 가치로 내세우는 인터넷매체들이 속보경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데스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인터넷신문의 경우 기사 클릭 수와 언론사의 수익이 연동되는 구조이다 보니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를 추구할 수밖에 없고, 이런 언론환경 속에서 미투 보도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각 침해유형별 대표적인 기사들을 보며,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구체적 침해사례

### 가. 성폭력 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

한국기자협회 '성폭력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은 “언론은 성폭력 범죄를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야기 소재로 다루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범행 수법을 자세하게 묘사할 경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인식하게 할 위험성이 높고, 이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투 관련 언론보도에서 성폭력 가해자의 범행수법을 그대로 기사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뉴스통신사인 뉴스1코리아의 2019년 1월 24일 “생리 열달간 안 하게 해줄까?...인천 사립 여고생 ‘스쿨미투’” 제하의 기사가 대표적이다. 이 기사는 한 사립학교 여고생들이 학교 교사가 성희롱적, 여성차별적 발언을 한 사실을 ‘스쿨미투 SNS’를 통해 고발한 것을 보도하면서 해당 교사의 부적절한 발언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였다. 이를테면 “교복이 몸을 다 가리기 때문에 음란한 상상을 유발시킨다. 교복이 가장 야한 옷이다”, “(여성 교생을 겨냥해) 저렇게 예쁜 사람이 있으면 성추행하고 싶은 것이다”, “남성은 고학력 여성과 결혼하는 것을 꺼리니 A대까지만 나와야 한다”, “(생리통이 심한 학생에게) 10달 동안 생리 안 하게 해줄까?”, “똥 생긴 X들은 토막살인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여과 없이 기사화하였다.

해당 기사는 스쿨미투의 사례를 소개하는 외형을 띠고 있지만 기사의 대부분을 해당 교사의 매우 부적절한 성희롱적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는 데 할애하였고, 또한 제목도 가장 자극적인 “생리 열달간 안 하게 해줄까”라는 발언에서 직접 인용해 사용했다. 결국 위 기사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다시 한 번 성적 대상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인터넷 국제신문에 2019년 1월 4일 게재된 “신유용 유도선수 폭로글 보니...코치가 성폭행 후 “임신테스트기 해봐라”(전문포함)”라는 제목의 기사는 자극적인 성폭행 범행수법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위 기사는 신유용 씨가 자신의 SNS에 공개한 폭로

글을 가감 없이 그대로 게재하였는데 피해자가 게시한 글에는 과거 신유용 씨가 성폭행 피해를 입었을 당시의 상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성폭력 피해자는 자신의 사적 공간인 SNS 등에 글을 올릴 때, 자신의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쓸 수 있다. 당연히 성폭력 피해자는 기사화하기에 적합한 수위로 가공하여 글을 작성할 의무도 없다. 그러나 기자는 다르다. 미투 관련 일부 보도들을 보면, 성폭력 피해자가 SNS 등 불특정다수가 접근가능한 공간에 피해사실을 공개적으로 올린 점을 마치 면죄부처럼 활용한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일부 언론은 피해자가 올린 글을 그대로 게시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듯이 제목에서부터 ‘전문포함’이라고 알리며 책임을 회피한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의 게시글을 언론사가 가감 없이 직접 인용하는 경우 피해자가 폭로한 피해사실의 본질은 훼손되고, 자극적인 내용들만 가십성으로 소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 나. 성폭력 피해자 부각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미투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성폭력을 당한 미투 피해자가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중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호기심에 가까운 관심을 갖더라도 언론은 미투 보도에서 피해자를 언급하는 데 신중해야 하며, 이는 미투 피해자가 자신의 신원을 공개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미투 피해자가 자신의 신원을 공개한 것은 자신의 불이익을 감내하면서까지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릴 필요가 있을 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자신을 외부에 드러냈다고 해서 언론이 기사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부각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런데도 몇몇 언론은 피해자의 사진을 동의 받지 않고 방송에 내보내거나 피해자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여과 없이 보도했다.

채널A는 2019년 1월 14일 방송에서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고, 과거의 성폭행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린 전 유도선수 신유용 씨의 사진을 본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게재하여 언론중재위의 시정권고를 받았다. 해당 방송을 보면, 출연 기자가 신유용 씨의 과거 성폭행 피해사실을 소개할 때 신 씨의 정면 얼굴 사진이 함께 나오며, 신 씨가 여행을 가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진들도 함께 소개된다. 단순히 흥미를 끌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이처럼 성폭력 피해자의 사진들이 관련 보도와 함께 제시될 필요는 없다. 신 씨의 SNS상 사진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게재하여 시정권고를 받은 언론사는 이밖에 14곳이 더 있었다.

#### 다.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 관련 선정적 묘사

안희정 전 지사의 비서 성폭행 사건은 비서 김지은 씨의 폭로가 있을 당시 안희정 전 지사

가 차기 대통령으로 촉망받던 상황이었던 만큼 사안의 폭발력이 컸고 언론의 관심도 매우 높았다. 또 관련 형사판결에서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를 선고해 법원의 판결까지도 엇갈리면서 소송 외적인 공간에서도 많은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안희정 전 지사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후 그의 부인 민주원 씨가 자신의 SNS에 김지은 씨와 안 전 지사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폭로성으로 공개하였는데, 이를 많은 언론이 받아쓰기 식으로 보도하면서 이 과정에서 김지은 씨의 사생활이 선정적으로 기사화되었다.

대표적으로, 뉴스통신사인 아시아뉴스통신은 2019년 2월 21일 “김지은, 슬립만 입고 안희정 방에서... “뿌듯하고 즐거웠다” 안희정 부인 민주원 ‘재폭발’” 제하의 기사에서 김지은 씨가 지인에게 보낸 “(안 지사에게) 릴렉스와 생각할 시간을 많이 드린 것 같아 뿌듯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기사에 인용하며, 제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사적대화 내용을 과도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 김지은 씨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언론중재위의 시정권고 대상이 되었다. 또한 위 기사는 제목에서 민주원 씨의 폭로 내용과 김지은 씨가 제3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교묘하게 한 문장에 넣어 불필요하게 김지은 씨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유도했다.

#### 라. 성폭력 피해자 사생활 공개

성폭력 피해자 사생활 공개로 시정권고를 받은 기사 1건도 안 전 지사와 관련한 보도에서였다. 안희정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는 김지은 씨가 재판과정 중에 제출한 김 씨의 병원 진단서를 김 씨의 주장을 탄핵하기 위한 목적에서 자신의 SNS에 공개했는데 인터넷 금강일보는 2019년 3월 22일 위 진단서의 실물을 기사와 함께 그대로 공개했다. 위 기사는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을 공개한 이유로 시정권고를 받았다.



안희정 전 지사가 공인이고,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가 공적인 관심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을 기사화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해 여성의 내밀한 개인정보가 담긴 병원기록을 게재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그런데 해당 언론은 김 씨의 산부인과, 정신과 진단서의 사진을 민주원 씨의 SNS를 인용하는 형식을 빌어 그대로 공개하였다. 단순히 기사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이상은 미투 관련 보도에서 언론중재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대표적 기사들을 침해유형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 기사들을 보면 성인지 감수성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보기 어려운 데, 몇몇 기사는 성인지 감수성에 무신경하다거나 이를 단순히 무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의 원칙에 저항한다는 인상마저 준다. 미투 보도에 성인지 감수성의 결여는 언론의 단순한 무신경에 기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적인 부분도 없지 않다는 생각이다. 기사의 조회수, 방송 시청률이 언론사의 수익과 연동되는 상황에서 미투 보도는 성폭력이라는 자극적인 사안과 결부되어 있는 만큼 언론이 이를 악용할 개연성도 그만큼 큰 것이다.

하지만 이런 지적이 계속되면서 미투 이후 언론 스스로의 자정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종전의 성폭력보도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다시 손질했고, 여러 토론회 등에서 언론 스스로가 반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 IV. 미투 운동 이후 언론의 개선을 위한 노력

### 1. 미투 운동 이후 성폭력보도 가이드라인

미투 관련 언론보도의 성인지 감수성 결여를 우려하는 지적은 미투 운동 초기부터 있어왔는데 이에 대한 언론 스스로의 자정 움직임이 있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2014년 한국기자협회,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은 공동으로 '성폭력 사건 보도수첩'을 발간해 그 안에 '성폭력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 '성폭력 사건 보도 실천요강'을 게재했는데, 한국기자협회는 미투 운동이 촉발된 이후인 2018년 6월 위 '성폭력 사건 보도수첩'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188개 회원사 기자들에게 배포하였다<sup>6)</sup>. 한국기자협회는 '사건별 언론보도 사례와 피해유형' 등 일선 기자들이 무신경

6) 여성가족부 정책뉴스 (2018, 6, 10), "성폭력·성희롱 사건 보도 시 기억할 5가지!". URL :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fSn=706267](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fSn=706267)

하게 간과할 수 있는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선별해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기사화에 유념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sup>7)</sup>.

한국기자협회는 우선 성폭력·성희롱 사건 보도의 경우 언론부터가 잘못된 사회통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첫 일성으로 내걸었다.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인격을 침해당한 심각한 인권침해의 문제이자, 그 원인이 잘못된 성 인식과 성차별적 문화 등 사회문화적 구조에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 ▲선정적, 자극적 보도 지양 ▲신중한 보도 ▲성폭력 예방 및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침으로 제시하며, 그 구체적 방향성을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또한 단순히 해당 사안을 젠더감수성의 견지에서 보도하는 것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 제도나 관련 법률 정보,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등 성폭력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보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 자정적 움직임이 아직 와닿을 정도는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이런 이유로 언론 외부에서 언론에 대한 규제책 마련이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2. 그밖의 제언

한국기자협회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지만 그 이후에도 미투 관련 보도에 있어 언론이 위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이어졌다.<sup>8)</sup> 또한 미투 운동 이후에 ‘기자 단톡방’ 사건에서 기자들은 게시판의 익명성 뒤에 숨어 직업윤리를 저버린 채 성폭력 피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며 부적절한 품평을 이어갔고, ‘미투 조심하라’며 미투 운동을 조롱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는 관련 보도를 다룰 때 언론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이자,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린 대표적 사건이었다.

언론종사자가 바뀌지 않으면 보도관행이 바뀔 수가 없는데 언론종사자에게 성인지 감수성을 스스로 유념하라고 요구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성인지 감수성, 이 원칙이 언론의 성폭력 관련 보도 과정에서 훼손될 경우 성폭력 피해자는 더 큰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성폭력 관련 보도에 다른 범죄 보도와는 차별화된 민감성, 예민성이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성인지 감수성은 언론에게 단순히 권고하고 넘어갈 원칙이 아닌 강제할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감

7)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 참조. URL : [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1](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1)


8) 윤수현 (2018, 7, 4). 안희정 공판 보도,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 어겨. <미디어스>. URL :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171>

시기관의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이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부적절한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부적절한 미투 관련 기사의 퍼나르기를 바로 막을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 등에서 해당 기사가 검색되지 않게 임시적으로 해당 기사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sup>9)</sup> 또한 지금 나와 있는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언론사에 적절한 수위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언론과 합의해 나가는 과정도 필요해 보인다.

## V. 맺음말

우리 언론의 미투 관련 기사들을 보면 아직도 성폭력 피해자가 아닌 대중, 그것도 매우 자극적으로 해당 사안을 소비하려는 대중의 관심에 맞춰 보도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언론이 독자나 시청자의 관심사에 부합하는 기사를 작성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다. 그러나 미투 관련 보도에 있어서는 독자뿐만 아니라 미투 피해자가 다른 한 축에 반드시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이해를 골자로 하는 성인지 감수성이 미투 관련 기사의 대전제가 되지 않는 이상 언론은 성폭력의 또 다른 2차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까지 성폭력 피해자를 괴롭혀온 것은 비단 가해자뿐 아니라 전 사회였다”고 했다. 어떤 입장을 견지하느냐에 따라 언론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다시 피해를 주는 가해자가 될 수도, 피해자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성폭력이 만연한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는 피해자 보호의 최후 보루가 될 수도 있다. 아직까지의 언론은 전자에 가깝다는 지적이 많지만 피해자 보호의 보루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또 언젠가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언론 스스로의 자정 움직임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언론중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언론관계 기관들을 중심으로 성인지 감수성의 가치를 훼손한 보도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9) 박준용 (2018, 3, 20). “미투 보도’ 고민 없이 ‘받아쓰기’하면 안 됩니다”. <한겨레>. URL: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836949.html>



# 말과 사물, 그리고 미디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하여

서경주 언론중재위원

##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해석만이 있을 뿐.”-프리드리히 니체

고대 그리스 이래 중세에 이르기까지 서양의 교양 교육은 언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고대의 3대 필수교양과목(trivium)은 모두 언어에 관한 것으로 문법, 논리학, 수사학이 그것이다. 문법과 논리학이 난삽과 모순을 피해 언어가 담고 있는 의미를 명징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면 수사학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기술이다. 수사학은 강조와 반복의 효과를 기본으로 한다. 강조가 수반할 수밖에 없는 완고함을 가리기 위해서는 완곡어법을, 반복에서 오는 진부함을 피하기 위해서는 비유와 상징이라는 수단이 동원된다. 여기에는 불가피하게 주관적이고 허구적인 요소들이 개입한다.

“신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는 성경 창세기의 구절은 말과 사물 혹은 말과 현실세계와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사물은 존재하지만 그 사물을 지칭하는 말에 담겨진 의미로서 인식되며 말이 있음으로써 존재와 비존재, 빛과 어둠의 분별이 생긴다. 그러니 고대세계에서 말과 관련된 교양과목을 이수한 연후에 사물과 현상에 관한 네 개의 과목(quadrivium), 즉 천문, 수리, 기하, 음악을 공부하게 한 것은 자연스럽다. 이는 결국 사물과 현상, 궁극적으로는 인간 그 자체까지도 언어적 텍스트를 통해 인식되고 해석된 것으로서 존재한다는 세계관의 반영이다.

하지만 인간의 언어는 구체적인 주체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발화되고 인식·이해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관적이다. 사물을 지칭하는 체언들은 객관적이라고 해도 그것들이 하나의 맥락을 구성하면 이미 주관의 영역에 포섭된다. 인간은 각자가 서있는 실존적 관점에서 말을 하고 말을 듣는다. 따라서 말과 사물의 관계는 정합과 부정합, 조응과 상위의 사이를 위태롭게 넘나든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써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으며 해석의 엔트로피는 높아지고 진실은 묘연해진다.

## 사실, 진실 그리고 권력

어렵게 찾아낸 진실의 언어는 불편하다. 그것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는 콤포트 존(comfort zone)에서 발화의 권력을 행사한 자를 끌어낸다. 그 콤포트 존은 일치된 가치와 이데올로기로 충만해 있다. 반항과 분란은 용납되지 않으며 소통의 대상들을 한 곳으로 몰아가는 독선이 거침없이 관철된다. 이곳의 이데올로기는 픽션이며 그 허구의 영역은 희망과 낙관으로 차 있다.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 이데올로기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의미를 상실한다. 종말론조차도 종말 이후, 평온과 풍요가 끝없이 펼쳐진 미래를 그리고 있다. 이데올로기는 허구적이지만 실증적 확인, 즉 팩트체크를 요구하지 않는다. 오로지 과거의 경험을 미래의 전망으로 투사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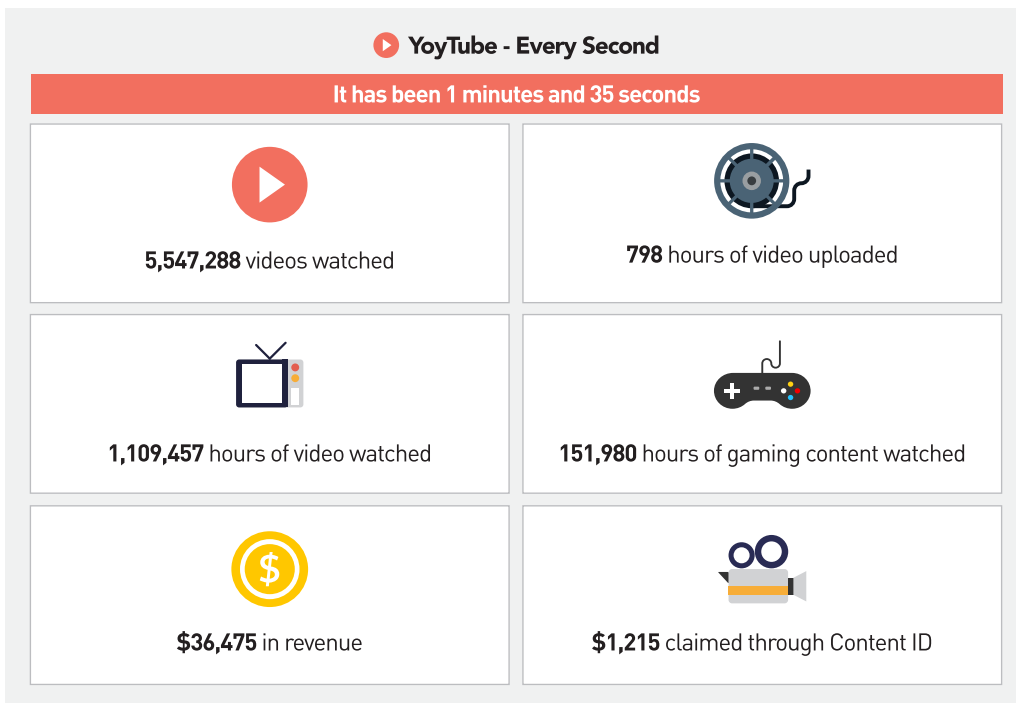
인류가 만들어낸 위대한 텍스트 중에는 사실의 기록보다는 픽션이 많다. 판타지이든 리얼리즘이든 픽션은 이데올로기를 숨기고 있다. 언론은 그 이데올로기의 허구성과 공허함을 지적한다. 희망을 무너뜨린다. 그러기에 고통스럽고 불편하다. 언론의 본령은 그 불편함의 조성에 있다. 언론은 사실이라는 텍스트를 탐색해 진실이라는 내러티브를 구성한다. 진실된 이야기는 언론의 궁극적 목표이다. 언론은 그런 면에서 낙관적이지 않다. 희망의 신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둔친 현실을 이야기한다. 그리하여 권력을 안온하고 희망에 차있는 콤포트 존으로부터 황량한 현실로 끌어낸다. 권력은 그 순간 진실과 마주한다. 진실과의 대면은 여태까지 누려온 권력의 포기를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럼으로 허위, 오도, 날조, 과장, 왜곡, 분식의 유혹에 이끌린다.

권력은 정치권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러한 권력을 행사하는 포괄적 의미의 인플루언서들이다. 트럼프 같은 정치인부터, 일개 유튜브 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과 분야에서 활동하는 행동주체 그리고 그 대리인들이 포함된다. 이들이 사실을 말로 호도하고 진실을 말로 왜곡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렵지 않다. 그야말로 ‘말은 쉽다.’ 그리하여 권력은 쉬운 길을 택해 진실의 순간을 피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극단적으로는 거기서 더 나아가 허위와 날조를 수궁하라는 지록위마(指鹿爲馬)의 공포를 조성한다.

## 미디어의 범람, 그리고 가짜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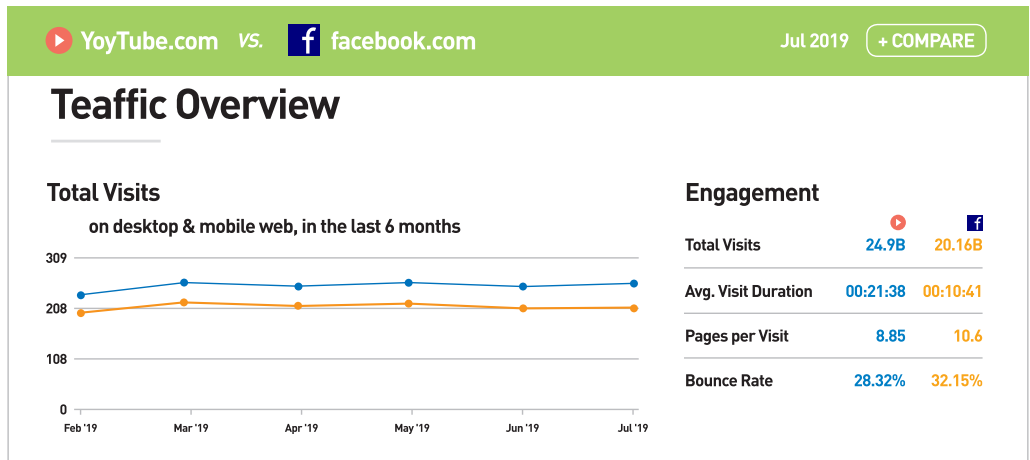
미디어는 넘쳐난다. 거의 무한팽창에 가깝다. 지상파나 케이블을 통한 채널도 이미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아졌고 OTT나 모바일은 말할 것도 없다. 유튜브는 2005년에 등장한 신생매체이다. 그러나 설립된 지 15년이 안 돼, 매체파워 지존의 자리에 올랐다.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초당 접속상황(YouTube-Every Second)에 들어가 보면 그 위력을 실감하게 된다.

〈그림 1〉 유튜브 초당 접속상황(YouTube-Every Second)



〈그림1〉에서 보듯이 필자가 지켜본 지 1분 35초 만에 550만 편, 누적 1백만 시간 이상의 비디오가 조회되었고 약 800시간 분량의 비디오가 업로드되었다. 그리고 순식간에 3만 6천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현재 유튜브를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인구는 13억에 이르고 매일 3천만 명이 유튜브를 방문해 50억 편의 비디오를 소비한다. 현재 유튜브는 모바일을 통해 이뤄지는 모든 인터넷 트래픽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유튜브 이전의 어떤 미디어도 이런 양적 성취를 이루지 못했고 그 기록은 계속 갱신 중이다. 유튜브와 순위를 다투는 페이스북 역시 괄목할 만하다. 〈그림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페이스북은 유튜브를 바짝 뒤쫓고 있다

〈그림 2〉 유튜브 vs 페이스북 트래픽 비교(출처: 시밀라 웹)



2019년 상반기 동안 페이스북의 방문회수는 200억 회가 넘고 이용자들은 매 방문 시 평균 10분 이상 머무르며 10건 이상의 콘텐츠를 조회했다. 페이스북의 작년 매출은 60조 원, 영업이익은 28조 원으로 이익률이 50%에 육박한다. 페이스북의 종업원 수는 약 4만 명으로 32만 명인 삼성전자 종업원 수의 8분의 1에 불과하다. 수익성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진다. 인터넷 미디어들의 트래픽을 비교하는 시밀라웹(Similarweb)에 따르면 트래픽 100위 안에 든 전통적인 미디어는 BBC와 뉴욕타임즈 두 매체밖에 없고 그것도 50위권 밖이다. 중국의 바이두를 제외하면 세계적으로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5대 인터넷 매체가 미디어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미디어의 양적 팽창과 매체 간 혼용은 거짓과 날조가 서식하기에 적합한 생태계를 만들었다. 이 인터넷 강자들의 공통된 강점은 매체는 판을 펼쳐놓기만 하고 이용자들이 콘텐츠 혹은 메시지라는 상품을 나름대로 만들어 올려 교환하고 소비하는 형식에 있다. 한마디로 개방과 방임을 강점으로 삼는다. 따라서 게이트키퍼 과정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허술할 수밖에 없다. 개방과 방임에 전제되는 자율은 기대하기 어렵다. 일례로 〈그림1〉에서 보듯이 과도한 수준의 폭력물과 선정적 콘텐츠, 그리고 명백한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알고리즘인 콘텐츠ID를 통해 환수한 범칙금액은 1,215달러에 불과하다. 개방과 방임은 효율적이지만 탈윤리화(demoralization)라는 부수적 피해가 불가피하다. 가짜뉴스는 미디어 탈윤리화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 포스트-모던 미디어가 포스트-트루쓰(post-truth)의 메시지를 나른다. 따라서 포스트-트루쓰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메시지 생산자의 윤리와 규범이 아니라 미디어소비자들의 비판적 수용능력이 중요해진다.

## 리터러시 혹은 문해능력

권력은 지식과 정보를 독점하려는 속성을 가진다. 독점의 방식은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다. 때로는 자신마저 속이며 비밀을 지키려 한다. 중국에서 패자의 덕목으로 후흑(厚黑)을 강조한 것은 이런 권력의 속성을 반증한다. 미디어로서의 문자는 오랫동안 권력을 가진 자들의 독점물이었다. 근대 이후 문자해득을 위한 교육은 시민들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로 되었지만 르네상스 시대까지도 귀족과 성직자를 비롯한 소수 엘리트 계층의 특권으로 인식되었다. 계몽주의 사조가 주류를 이루고 공교육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 18세기 초만 해도 당시 선진국이었던 프랑스의 문맹률은 70%가 넘었다. 안 배운 것이 아니라 가르치지 않았다. 유네스코의 자료에 따르면 지금도 인류의 문맹률이 10%대에 이르고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계층과 젠더 그리고 지역 간 문맹률의 편차도 크지만 전통적인 개념의 문맹, 즉 문자해득을 못하는 문제는 아프리카나 서남아시아 일부 후진국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해소되었다.



그러나 리터러시의 개념은 기술의 진보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그 외연이 확장되었다. 특히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그것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폭넓게 해석·적용되고 있다. 2006년에 출간된 유네스코의 “만인교육 실태보고서(Education for All: Global Monitoring Report)”에 따르면 리터러시의 개념은 정보 문해능력(information literacy), 미디어

문해능력(media literacy), 과학 문해능력(scientific literacy) 등으로 변용 확장되고 있다. 단순히 텍스트, 이미지, 음성 언어들을 구사하고 이해하는 인지기술(cognitive skill)을 뛰어넘어 사회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고 비판적 성찰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포괄적 의미로 재해석되고 있다.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미디어는 넘쳐나고 가짜뉴스 같은 부작용도 견잡을 수 없게 만연하지만 미디어 교육은 무시되고 있다. 공교육과정은 미디어를 교육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도 미디어 자체를 가르치는 데는 등한한 태도를 보여왔다. 따라서 언론정보학과나 신문방송학과 등과 같이 대학에서 미디어를 전공하는 과정을 제외하면 미디어를 이해하고 미디어가 전달하는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 초등교육은 물론이고 중등교육과정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포르노, 폭력, 사행성 게임 등에 대한 금지와 억제라는 소극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미디어의 정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미디어 소비자들은 미디어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피드백을 주어 메시지의 생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미디어는 현실을 거울처럼 비추지 않는다.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는 대부분 누군가의 주관에 의해 관찰되고 해석된 현실이며 그것들로 짜여진 가치이자 이데올로기이다. 누구나 소통을 강조하지만 소통의지와 소통되는 메시지의 진실성은 별개문제이다. 미디어가 어디에나 존재하는(omnipresent) 환경에서 소통되는 메시지의 양적 확대가 진정한 소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소통은 많이 하지만 사물이나 현상에 정치하게 조응하는 진실의 언어는 오히려 드물다.

유비쿼터스 시대에 우리는 어디서나 미디어에 접속된다. 그러나 미디어 문맹자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논의하는 데서 배제되거나 침묵할 수밖에 없다. 미디어에 이용당하는 유용한 바보(useful idiot)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질문하는 수용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는 무엇을 의미하며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우선적으로 수용자들이 의심하며 질문하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미디어 자체가 갖는 사회·경제적 그리고 기술적 한계와 메시지의 생산에 작용하는 인자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개인의 선택이나 관심에 맡겨질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양필수 과목으로 초등학교부터 중등교육에 이르기까지 공교육 과정의 커리큘럼이 포함되어야 한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고대의 논리학이나 수사학 못지 않게 민주사회 시민들에게 요구되는 교양이자 윤리적 덕목이기 때문이다. 요즘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가짜뉴스 문제는 장기적으로는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통해 극복되어야 한다. 

# 5G

## 5G와 저널리즘: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한다

조영신 SK 브로드밴드 실장  
조형석 SK 브로드밴드 매니저

2019년 4월 1일, 뉴욕타임즈는 버라이즌(Verizon, 미국의 통신사)과 손을 잡고 5G 저널리즘 랩(5G Journalism Lab)을 출범시켰다. 현재 북미시장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하는 Verizon 조차도 2019년 말까지 30개 도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인들이 5G를 체감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뉴욕타임즈가 5G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

통상적으로 저널리즘은 속도에 민감하다. 가장 현실감 있는 정보를 신속하게 보도하는 것이 뉴스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5G의 속도는 매력적일수도 있다. 영화 <1987>에서 기사를 송고하기 위해서 공

<그림> 뉴욕타임즈의 5G 저널리즘 랩(5G Journalism Lab) 출범 발표



1) <https://www.lifewire.com/verizon-5g-4178293>

중 전화 박스를 찾아가던 장면을 연상한다면, 지금 스마트폰으로 작업해서 카톡 등으로 기사를 송고하는 현재의 통신 시스템이 얼마나 저널리즘의 역사와 현장을 바꾸어 놓았는지를 실감할 수 있다.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이 컴퓨터로 기사를 바로 작성해 와이파이 망을 통해 송고할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현장의 생생한 장면을 촬영해서 바로 데스크로 보내는 것도 현재의 저널리즘 현장이다. 이 맥락에서 보면 통신의 진화는 분명 저널리즘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기존의 통신 기술이 저널리즘에서 요구하는 '신속성'의 한계나 저해 요인이었는가에 대해 자신있게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5G의 속도는 허구일 개연성도 있다. 4G가 엄연히 실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5G의 속도가 저널리즘의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긴 힘들다. 미래의 가능성은 현실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기존 서비스에서 속도는 결핍의 문제가 아니기에 5G는 미래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뉴욕타임스와 버라이즌의 만남은 기존의 텍스트나 영상 기반 저널리즘이 아니라 5G의 기술적 가능성이 현실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의미와 맥락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 단초는 <5G 저널리즘 랩> 출시 '선언문'을 보면 알 수 있다.

“5G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뉴스 수집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언론

인의 손에 5G가 놓여진다면 새로운 작업 흐름(workflows)이나 4G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을 것인지 확인해 보려고 한다”<sup>2)</sup>

뉴욕타임스는 4G와 5G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5G는 과거 3G나 4G와는 달리 속도에 치중된 기술은 아니다. 5G는 4차 산업혁명이란 미래의 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이기 때문이다. 5G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인 “초연결과 지능화”를 달성하기 위한 인프라 조건을 구체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도로서 정의됐다. 그래서 등장한 5G의 세가지 키워드가 ‘초고속’과 함께 ‘초연결’, ‘초저지연’이다. 초연결과 초저지연이 만들어졌을 때 작업흐름이 바뀌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대목이다. 이어지는 문장에서 뉴욕타임스는 이를 조금 더 구체화했다.

뉴욕타임즈는 160개국에서 매일같이 기사를 송고받고 있다. 각국 주재기자들의 기사를 받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과 고대역이 필요하다. 실시간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서는 사진기자가 수천 장에 달하는 고품질의 사진을 미디어 서버로 보내주어야 한다. 이 맥락에서 5G를 통하게 되면 고품질의 사진이나 영상, 오디오, 심지어 3D까지도 실시간(Newsroom in real-time)으로 데스크에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sup>3)</sup>

2) 원문은 다음과 같다. “we see high potential for leveraging 5G to enhance our ability to gather the news, so we’re experimenting with how 5G in the hands of our journalists might enable new workflows and capabilities not possible with today’s 4G technology.”

3) The Times has journalists reporting on stories from over 160 countries. Getting their content online often requires high bandwidth and reliable internet connections. At home, too, covering live events means photographers might take thousands of photos without access to a reliable connection to send data back to our media servers. We’re exploring how 5G can help our journalists automatically stream media — HD photos, videos and audio, and even 3D models — back to the Newsroom in real-time, as they are captured.

원거리에 있는 데스크가 현장의 기자와 동일한 호흡을 할 수 있다면 기사의 품질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의 기술을 통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기사를 제공하고 저작할 수 있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데스크와 기자가 동일한 호흡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그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기사를 보는 이용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출범 선언문에서 뉴욕타임스는 실감형 스토리텔링(Immersive Storytelling)<sup>4)</sup>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글을 맺는다. 물론 지금도 실감형 기사를 제공하는 하지만, 저작도구의 불편함이나, 해당 기구의 보편적 이용이 한계를 보이는 상황이 5G로 인해서 역동적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볼 수 있다.<sup>5)</sup>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만으로 다수의 이용자가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함수를 수반하는 작업이다. 모두들 “와우”라곤 하지만, 상시적이고 일상적인 아이템이 되기에는 무리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서비스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범 선언문의 내용에는 5G가 보편화될 경우 4G에서는 기술적 가능성으로만 여겼던 실감형 콘텐츠가 항시적으로 사용 가능한 보편적 서비스로 진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 담겼다고 보여진다.

그럼 다음 질문은 실감형 스토리텔링이 5G로 인해서 보편적 서비스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이냐일테지만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대답은 없다. 다만 5G

의 기술적 지향점은 ‘상용화’이고 그 기술적 특성은 ‘목적성’이기에, “실감형 스토리텔링을 구현해 내는데 보다 적합하다는 이유로 보편적 서비스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 정도의 대답은 가능하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5G의 기술을 살펴보자. 앞서 5G의 기술 키워드가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성이라고 했다. 이 각각의 항목들은 eMM, eMTC, uRLLC로 구체화된다. eMBB(Enhanced Mobile Broadband)는 전송속도를 초고속화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어서, 화상회의, 원격진료, VR 스트리밍 등과 같이 데이터 전송량이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mMTC(Massive Machine Type Communications)는 초연결을 목표로 해서, 스마트시티, 스마트빌딩, 센서, 네트워크 각종 태그 트래킹 등과 같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많은 기기들을 서로 연결해서 통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술이다. 끝으로 uRLLC(Ultra-Reliable and Low-Latency Communication)는 자율주행 자동차, 원격수술, 공장 자동화 등 전송지연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신뢰도가 높은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각 기술의 목표가 다른 만큼 요구하는 수준도 상이하다.<sup>6)</sup> eMBB에서는 10Gbps가 넘는 데이터 전송속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에, mMTC는 1Kbps에서 100Kbps 전송속도면 충분하다. 대신 1km<sup>2</sup> 내에서 동시에 100만 대 기기까지 연결될 수 있어야 하며, 배터리도 최고 15년까지 사용할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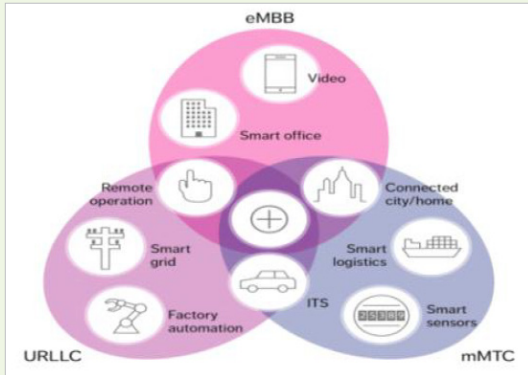
4)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18/03/20/arts/design/bowie-costumes-ar-3d-ul.html>

5) <https://www.nytimes.com/spotlight/augmented-reality>

6) 원문은 다음과 같다. “We’re also experimenting with how we can deliver more dynamic storytelling formats to our readers as 5G devices become used more widely.”

7) 윤대균 (2019. 3). 5G 상용화와 함께 새롭게 조명되는 엣지 컴퓨팅. <2019 KISA Report>, Vol 3., pp.1~6.

<그림2> 5G 기술: eMBB, eMTC, uRLLC



자료: <https://twitter.com/ericssoniot/status/826474814877683712>

<그림3> 통신사업자의 클라우드 뷰 (윤대균, 2019, 3)



을 정도의 초저전력을 요구한다. 한편 uRLLC는 50Kbps에서 10Mbps 정도의 속도만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용자단, 즉 end-to-end 지연시간에 대해서는 1ms 내외의 초저지연(ultra low latency)을 요구한다. 자율주행 자동차나 원격수술과 같은 응용 분야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구사항이다. 엣지 클라우드도 이 관련성에서 등장한다. 초지연성을 보장받기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전진배치해서 지연의 시간을 단축시키자는 것이다.

이 세가지 기술이 서로 다른 목적성을 가지고 있지만, VR 등의 기존 뉴스 사업자들이 추진하고자 했던 실감형 콘텐츠의 사용성과 용이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지향점이 일치한다. 초고속이 고용량의 VR 혹은 360 콘텐츠를 부담없이 빠르게 전달할 수 있게 하고, 초지연성이 VR 등에서 계

임 등을 활성화시켜서 결국 VR, AR과 같은 실감형 콘텐츠의 보편화에 기여할 수 있을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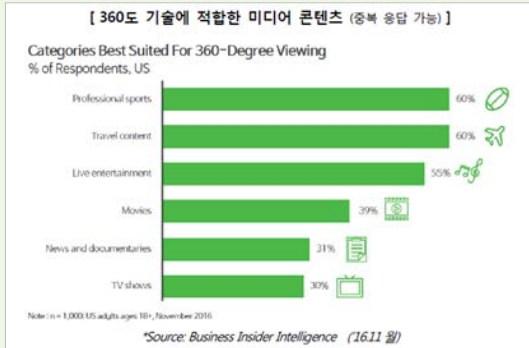
그러나 현재까지 뚜렷하게 무언가가 나온 것은 아니다. 오늘의 한계가 새로운 기술로 극복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기대는 것 밖에는 없다. 따라서 5G가 막 도래한 지금 저널리즘의 영역에서 5G의 적용 사례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기술적 가능성이 확보되었을 경우 시장 내에서 어떤 임팩트를 보여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현재까지 구현된 서비스가 보편화될 것을 상정해서 상상하는 것은 가능하다. 5G는 기술적 가능성을 조금 더 보편화시킬 수 있는 기술의 목적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뉴욕타임스가 VR 저널리즘을 선보인후 여러 미디어가 VR을 선보이긴 했지만, 아직 대중화 단계로 진화하진 못했다. 그러나 가능성과 의미의 맥락에서만 이해하면 실감형 콘텐츠는 속도감있는 현실성을 재현하고픈 저널리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바로 VR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영역에서는 최근까지도 그 실험이 이어지고 있긴 하다.

실감형 콘텐츠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스포츠 중계다.<sup>3)</sup> 우선 스포츠 중계에 있어서 현장감과 정보 제공은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런 맥락에서 360도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다면, 이는 스포츠 중계의 현장감과 사실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로도 응답자의 60% 이상이 스포츠 중계나 여행 관련 콘텐츠가 360도 기술에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주고 있다(<그림4> 참고).

영국의 대표적인 스포츠 채널인 BT Sport는 2017년 BT Sport VR이라는 OTT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2D 영상에서 360도 영상으로의 화면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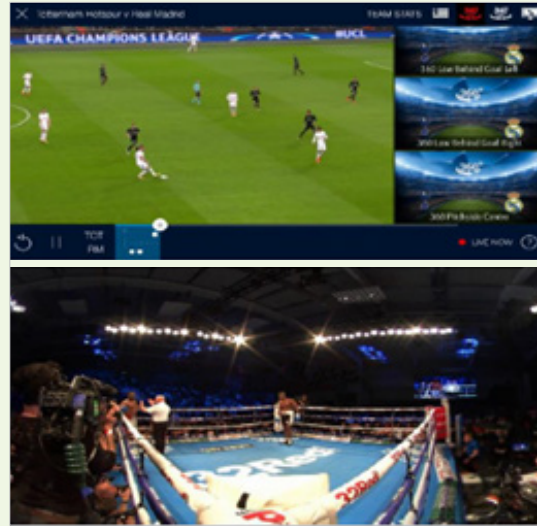
〈그림4〉 360도 기술에 적합한 미디어 콘텐츠 조사



환이 자유자재로 가능하며, BT Sport에 따르면 현재 이러한 화면 전환은 BT Sport VR만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SKT가 옥수수(oksusu)를 통해 골프 콘텐츠를 제공했었다. 축구 중계를 시청하는 도중에 시청자가 화면 우측의 360 버튼을 클릭하면 골대를 기준으로 사방의 시각에서 해당 장면을 보여줄 수 있다. 복싱 경기 등 다양한 경기 콘텐츠를 다양한 시점에서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공급자 중심의 시선을 사용자 중심의 시선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실험이 될 수 있다.

BT Sport VR은 영국 Premier League, FA Cup, World Title Boxing 등 유수의 국제 스포츠 경기를 360도 영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중이다. 독일 도이치 텔레콤도 Magenta VR을 내세워 2018년 12월, 독일 프로농구 ‘Telekom Baskets Bonn vs. EWE Baskets Oldenburg’ 중계를 세계 최초로 6K 해상도가 적용된 360도 VR 영상으로 제공한 바 있다. 해당 영상은 Deutsche Telekom과 미디어 기업 MediaKind 구. Ericsson Media Solutions, 그리고 Tiledmedia가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협력한 결과물로, 일반 스포츠 중계 영상보다 화질이 4배

〈그림5〉 영국 BT Sport의 스포츠 VR 콘텐츠



수준으로 개선되었으며, 데이터 전송 속도는 75% 향상되었다. VR이 가지고 있는 해상도나 속도의 한계를 5G를 통해서 극복한 셈이다. Dorna Sports도 TV 매체의 영향력 저하를 대비해 VideoPass라는 OTT 플랫폼을 출시하면서 360도 촬영 기법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Moto GP 경기 영상을 서비스 중이다. 360도 촬영기법이 적용된 모든 영상은 1,080HD 수준의 고화질로 제공되고 있다.

이들 서비스는 2017년~2018년 대부분 출시되었다. Magenta가 겨우 10만 명 이용 경험자를 확보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중화 단계로 진화하지는 못했다. 뉴욕타임즈가 야심차게 시도한 실감형 콘텐츠(VR)의 경우도 획기적이고 눈을 뺏는 데는 성공했지만, 일회성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VR이나 AR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가능성은 흥미의 소재이지 일상화의 소재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다시 5G가 주목되기 시작했다. VR이

8) 360도 동영상 사례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9. 9). 360도 촬영기법을 활용한 스포츠중계, 〈트렌드 리포트〉, p.7-11에서 가져왔다.

나 AR 콘텐츠가 대중화되는 데 5G가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SKT가 리그오브레전드를 VR로 실황중계하고, 골라보는 '뮤직 멀티뷰'를 제공하는 것도 그 가능성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5G가 구현해 낸 새로운 것들을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4G 시대에서 실험실에 갇혀 있었던 서비스 중에서 대중성과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콘텐츠가 무엇이나는 질문으로 질문의 축이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5G가 기여할 수 있는 저널리즘의 영역이 구체화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BT 등도 5G가 기존의 VR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영상산업 자체가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기 시작했다.<sup>9)</sup>

물론 5G도 만병통치약은 아니어서 보안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는 하다. 초연결성으로 무수히 많은 네트워크와 기기를 연결해야 하는 5G의 특성은 기존의 네트워크 보안과는 다른 차원의 보안을 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러 가상 네트워크 운영자들이 5G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상황에서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간 엄격한 격리를 요구해야 할 지도 모른다. 초고속, 초연결, 초지연성이라는 화두에서 보안의 기본적 특성인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보장받기 위한 새로운 철학과 방법이 도모되어야 할 지도 모른다. 더구나 5G는 서비스 지향적이라서 서비스의 보안 위협도 존재한다. 교과서적이지만, 개인정보침해 등의 위협요인은 실재한다.

자 정리를 해 보자. 뉴욕타임즈는 5G가 지향하는 기술적 방향성이 언론인의 업무흐름(workflow)

이 바뀔 수 있고, 더 나아가 실감형 콘텐츠가 더욱 창궐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5G가 막 도래한 지금 구체적인 흐름을 목도하는 것은 무리다.

다만 확실한 것은 적어도 4G 시대에 실험적으로 진행하던 것들이 좀 더 대중화되고 보편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가능하다. 물론 이 역시도 가능성이다. 새로운 무엇이 등장할 때마다 우린 과거의 실험을 끄집어 내어 그 새로운 진화를 꿈꾸었기 때문이다.

실험의 결과가 성과로 이어질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것이지만, 적어도 그 가능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겠다는 정도만으로도 기대를 품어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5G로 저널리즘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라고. 

9) <https://www.techradar.com/news/bt-sport-5g-remote-production-will-transform-broadcasting>

## 세월호 참사 5년... 재난 보도준칙 마련 이후에도 반복되는 문제

송중현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세월호 참사는 재난상황에 대하는 우리 언론의 태도에 큰 경각심을 준 사건이었다. 속보 경쟁에 대한 정확한 보도의 원칙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재난 보도에 대한 전문성 부재,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인권 침해에 가까운 무례한 보도 태도는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기에 충분했다.

당시 한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보고서에는 “세월호 침몰사건을 다룬 기자들은 소속 언론사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어부징을 통한 상업화, 흥미를 유발하는 과장 보도와 희생양 찾기 묘사를 이용한 극화, 그리고 선정주의적 인간 표적 보도에 가까운 시간과 지면을 허비했다”고 신랄하게 비판한 기고문이 게재된 바도 있다.<sup>1)</sup>

특히 피해 상황의 구체적 묘사를 위해 취재 기자가 현장을 직접 묘사하거나 목격자의 진술에 근거한 표현을 사용하기보다, 방송 진행자의 추측이나 가정에 근거한 표현을 많이 사용했고, 피해자의 슬픈 사연을 소개하기 위해 50년 지기 초등학교 동창생의 마지막 환갑 여행에 관한 이야기에서부터 여섯 살 어린이의 신상을 파헤친 이야기, 희생자들이 가족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

1) 김성재 (2014),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 <민언련 시민 모니터 기고문>. URL: <http://www.civilnet.net/xe/monitor/26763>

는 등 자극적인 사연을 소개하기도 하였다.<sup>2)</sup> 그 중 일부는 허위 사연이기까지도 했다는 점은 언론에 대한 불신을 넘어 공분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고도 넘치는 사안이었다.

이러한 신랄한 비판과 반성은 재난보도준칙 제정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고, 2014년 9월에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 등 5개 언론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재난보도준칙이 제정된 바 있다. 사실 재난보도준칙 제정 필요성은 세월호 참사 이후 처음 제기된 것은 아니었다.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직후에도 한국언론재단과 한국기자협회 등이 포럼 등을 개최해 재난보도준칙(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했지만 끝내 결실을 거두지 못했고, 이후에도 대형 재난(재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비슷한 시도가 몇 차례 있었지만 여론의 관심이 사라지면 작업이 중단되는 일이 반복됐다.<sup>3)</sup>

안타까운 희생을 치르면서 결실을 맺은 재난보도준칙은 재난관련 취재와 보도의 일반준칙, 피해자의 인권보호, 취재진의 안전 확보, 현장 취재협업체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재난 취재보도의 기준을 담고 있는 일반준칙은 정확한 보도, 피해 최소화, 비윤리적 취재 금지, 무리한 보도경쟁 자제, 선정적 보도 지양 등 15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준칙 제15조는 “피해자 가족의 오열 등 과도한 감정 표현, 부적절한 신체 노출, 재난 상황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흥미 위주의 보도 등은 하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관련 인물의 명예나 사생활, 심리적 안정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상세한 신상 공개는 최대한 신중해야 하고, 인터뷰를 강요해서도 안 될 뿐 아니라 13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취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6개항으로 하고 있다.

재난보도준칙 제정 이후 우리 언론의 재난보도 행태는 얼마나 개선되었을까?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대다수의 생각은 ‘별로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것이 이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효과적인 재난 관리를 위한 언론의 역할> 토론회에서 한 발제자는 “언론사 기자와 PR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에서 언론의 재난보도에 대한 태도나 행태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나 재난보도준칙 제정 이후로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인식이 나타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sup>4)</sup>

2016년에 발생한 제천 화재 참사 재난보도 역시 속보 경쟁으로 인해 정확한 사실 확인보다는 추측성 기사가 난무했고, 정부정책을 소개하는 KTV의 경우 재난상황을 홈쇼핑 프로그램 포맷을 통

2) 서은아 등 (2017). 재난보도방송에 사용된 자극적 표현 연구. <한민족어문학>, 76권, p.201-227.

3) 김시연 (2014, 4, 17). 막 나가는 세월호 보도...재난보도준칙은 없다?. <오마이뉴스>. URL: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81802](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81802)

4) 이재진 (2019, 8, 20).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보도 얼마나 바뀌었나. <미디어오늘>. URL: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867>

해 전달함으로써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 당시 청해진해운이라는 선박 소유 회사에 보도의 관심이 쏠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천 화재에서도 건물주에 대한 보도량이 급증하는 현상을 보인 바 있다.

2018년 강릉펜션에서 발생한 유독가스 질식 사망 사고는 피해자가 대학 입학을 앞둔 학생들이었다는 점에서 언론의 보도 방향이 원인과 대책 등의 구조적 문제보다는 피해자와 주변인들에 대한 개인적 사연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 일부 언론사 기자는 심지어 해당 학교를 찾아가서 친구가 사고 당했는데 기분이 어떠냐는 질문을 하는 도를 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해, 과도한 질문, 호기심, 동정 유발로 피해자 가족과 주변인의 트라우마를 증폭시키는 2차 가해자가 되기도 했다.<sup>5)</sup> 급기야 재난방송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 중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사고에 대한 과열된 취재 경쟁으로 피해자의 개인사까지 노출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유족과 지인들에 대한 스케치식 보도를 자중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림〉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자 보험금 관련 보도 화면 (관련 기사 URL: <https://www.nocutnews.co.kr/news/5161132>)



이러한 재난보도 행태는 2019년에도 지속되었다. 올해 5월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허블레아니호 침몰 사건으로 다수의 한국인 탑승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민언련

5) 정관용 (2018, 12, 19). 강릉 펜션 사고, 취재금지 청원까지? 2차 가해 막으려면. 〈노컷뉴스〉, URL:<https://www.nocutnews.co.kr/news/5078473>

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사고 발생 다음 날부터 “보험금 최대 금액”을 언급하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으며, 5월 31일 오후 3시까지의 관련 기사를 검색한 결과 보험금 관련 내용이 들어간 기사는 총 209건이었으며, 더욱이 기사 제목에 보험금 액수까지 명시한 기사도 25건이나 되었다고 한다. 이 자료는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희생자의 사망 보험금을 상세히 전한 모 방송사의 보도가 여론의 못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자의 생존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을 전제로 보험금 액수를 논하는 것은 희생자 가족은 물론이고 국민의 윤리적 감정도 거스르는 비도덕적 행태라는 지적도 덧붙이고 있다.<sup>6)</sup>

재난관련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가해의 문제는 전 세계 언론의 보편적인 현상일까? 영국 런던에서 2017년 6월에 발생한 공공임대주택 화재사건과 관련된 영국 언론의 보도행태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당시 영국 국민들에게 화재 사건의 비극을 전하는 영국 언론은 희생자와 피해자들의 신상 노출이 있을 수 있는 불필요한 장면의 보도를 자제하며 사건 경위와 정치권 공방, 피해자 구제 문제 등을 위주로 보도한 것으로 알려진다. 시신이나 피해자의 상처를 직접 보여주는 사진 공개는 암묵적으로 금기시되며 주로 화재로 불타는 건물을 비추거나 그것을 배경으로 보도하는 식이다. 이 화재 사건과 관련하여 영국에서 문제가 된 것은 언론의 재난 보도가 아니라 일반 국민이 SNS를 통해 재난 관련 사진과 글을 게시한 사건이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 인근에 살고 있던 한 주민이 현장에서 수습된 시신이 담긴 가방을 촬영해 인터넷에 5장의 사진을 올렸고, 화재 이후 희생자의 신상 노출을 하지 않기 위해 언론사들이 불타는 건물 위주로 보도한 것과 달리 그는 열린 가방 틈으로 보이는 희생자의 얼굴과 몸을 SNS에 노출했다. 결국 그는 공공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통해 외설적이며 부적절한 게시물을 게시했다는 죄목으로 고발돼 웨스트민스터 법원에서 3개월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문제가 된 사진은 모두 삭제됐다고 한다.<sup>7)</sup>

지진이나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본의 경우는 어떠할까? 일본의 재난보도는 ‘피해 중심보도’에서 ‘이재민 중심보도’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1994년 발생한 한신 대지진에서 검은 연기로 뒤덮인 시가지 장면, 옆으로 넘어진 고가도로, 도로를 막고 쓰러진 빌딩 등 피해 현장의 극적인 장면을 전달하는데 주력했던 것이 피해자와 이재민의 두려움을 자극했다는 반성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일본 언론은 정작 이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함에 따라, 정보공백이라는 2차 피해가 가중되었다는 학습을 하게 됐다. 이에 가족의 생존 여부를 신청 받아 알려주는 ‘안부방송’이 더욱 강화되었고, 사회적 약자인 시청각장애인을 배려하는 지침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국내에서 관측 이래 가장 규모가 컸던 2016년 경주 지진 당시, 이를 뒤에도

6) 최영주 (2019, 6, 3). 헝가리 유람선 침몰에 보험금 강조하는 언론. <노컷뉴스>, URL: <https://www.nocutnews.co.kr/news/5161132>

7) 김지현 (2017). 런던 화재 참사로 본 영국 언론의 재난 보도. <신문과 방송>, 7월호.

규모 4.5의 여진이 이어져 지역 주민들이 불안한 상태에서, 한국 언론이 경주 지역이 폐허가 된 것처럼 보도하여 이재민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안겨주고,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켰던 것과 대비되는 행태다.<sup>8)</sup>

우리 사회에서 재난보도준칙 제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재난보도의 문제가 반복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언론은 ‘안전 불감증’을 지적하곤 한다. 대부분의 사건은 ‘인재’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다짐하는 대책이 발표되곤 하지만 임시방편에 그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사한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은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만을 추구하는 잘못된 인식과 태도 때문이라는 것이 언론의 분석이다.

이러한 논리는 사건사고에만 해당하는 것일까? 재난보도준칙이나 재난방송매뉴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언론보도의 문제점은 이와 얼마나 다를까? 재난보도와 관련된 매뉴얼 또한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일까? 도대체 왜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는지, 많은 의문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 재현될 뿐이다.

재난보도준칙 제정 과정에 참여했던 한 언론인은 준칙의 성패는 현장 기자나 회사가 아니라 편집국, 보도국 간부의 손에 달려있다고 확신에 찬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sup>9)</sup> 그는 본사 데스크는 현장 취재기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준칙 제9조), 무리한 취재나 제작을 요구해서 정확성을 소홀히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준칙 제10조)는 두 가지만 지켜도 문제는 크게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현장의 기자가 낙중에 대한 불안감과 미미한 기사 내용에 대한 초조감을 떨쳐내고 정도를 지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도 간부들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오랜 세월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분석한 것으로 보여 공감이가는 내용이다. 하지만 준칙이나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 언론사 간부들의 공격 책임의식이나 저널리즘 윤리의 부재로만 설명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인터넷 포털과 SNS 플랫폼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뉴스 유통과 소비 구조가 언론사 내적 요인과 맞물리면서 문제가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듯하다. 먼저 속보를 내는 언론사 뉴스가 수많은 조회 수를 선점하고,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구조이다 보니, 정확한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이나 피해자 중심의 보도는 무시되기 십상이다. 이에 언론사가 속보 경쟁을 통해 클릭 전쟁을 치르는 인터넷 회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클릭 수가 포털의 “많이 본 기사”의 순위를 결정하고, 언론사의 영향력을 가늠하는 지표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에서 이러한 문제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또한 최근에는 재난 발생 시 현장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보자와의 인터뷰를 적극 활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공식적인 정보나 통계가 아닌 개인적 경험과 목격 내용이 여과 없이 시청자

8) 이흥천 (2016), 피해 보도 대신 이재민 위한 정보 전달에 힘 써, <신문과 방송>, 11월호.


9) 심규선 (2014), '기레기' 오명 벗기, 편집·보도국 간부 손에 달려, <신문과 방송>, 10월호.

들에게 전달되고, SNS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는 데 혼동을 주기도 한다. 합리적 의구심을 갖고 정보를 검증해야 할 언론의 책무와는 거리가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언론사의 자율적인 보도 매뉴얼 준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게 되고, 언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면서, 언론의 사후적 책임을 묻는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얼마 전 열린 <재난 피해자 명예훼손과 언론의 역할> 토론회에서, 법조계 패널은 “언론은 정확성보다 속보성, 객관성보다 선정성에, 피해자 사연 부각에 관심을 갖는다”며 재난보도준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준칙 위반 시 실질적 처벌을 강화하고, 재난 관련 법령에 명예훼손죄를 추가하고, 신속한 정정보도 관련 입법화 등을 제안하기도 하였다.<sup>10)</sup> 또 2017년 말에는 자살보도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언론사에 법적 제재를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게시되어 1만 2천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례도 있었다.<sup>11)</sup>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하지 않는 데 대해 언론의 책임을 묻는 법률적, 제도적 조치가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것인지, 또는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언론의 재난 관련 보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법 조항을 추가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 법률의 과잉금지원칙에서 수단의 적합성을 충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율적인 준수를 전제로 하는 재난보도준칙은 말 그대로 취재와 보도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지침 또는 안내서일 뿐이다. 우리 언론의 재난보도준칙은 해외 주요 언론사에 견주어 봐도 손색이 없는 수준으로 작성되어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준칙이 데스크 위의 문서로만 존재하는지, 기자의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는지가 아닌가 싶다. 재난보도준칙이 취재와 편집 과정에서 살아 있는 생물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선언적인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행동지침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준칙은 기준점으로 작동하는 것이고, 각 언론사 자체적인 매뉴얼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반복적인 교육을 하도록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위기는 오기 마련이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판단과 행동은 큰 차이를 보이는 것 또한 당연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나 주저함 없이 재난보도준칙에 입각하여 취재하고 보도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언론인에 대한 교육의 강화를 통해서건, 사후적인 책임을 묻는 실질적 제도의 강화를 통해서건, 의식의 영역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물로서의 재난보도준칙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10) 정민경 (2019, 7, 18). 세월호 이후에도 안 지켜지는 보도준칙. <미디어오늘>. URL: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60>

11) 국민청원 게시판 (2017, 12, 18). 자살 등에 있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언론사에 법적 제재가 있어야 합니다. URL: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9169?page=5>

# 일본의 헤이트스피치 규제법에 관한 검토 —혐한발언·시위를 중심으로—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1. 들어가며

일본국 헌법 제1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문명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서 평등은 자유, 박애와 동가치를 이루며 개인의 존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근대입헌주의의 전제가 되는 핵심이념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된다.<sup>1)</sup> 이처럼 차별금지에 대한 일본에서의 논의는 우리헌법상의 그것과 비교했을 때에도 그 개념, 법적성질, 내용, 헌법규정의 해석방법<sup>2)</sup>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으며, 형법상의 논의를 넘어 헌법적 논의의 대상으로 포함한다고 판단된다.<sup>3)</sup>

다만, 우리와 달리 일본에서 차별 문제는 소수민족인 아이누족, 과거 류큐왕국이었던 오키나와 지역 출신자, 부락민, 재일조선인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문제의 중심이 되어 다루어졌으며 이들이 헤이트스피치(Hate speech)의 주된 공격 대상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정의는 역사적으로 차별받거나 억압받아온 집단에 대하여 그 차별을 더욱 더 조장하는

1) 가령, 渋谷秀樹『憲法』,有斐閣,2010年,188p.

2) 제14조 제1항에서 차별금지의 사유로 정하는 요소를 열거규정이 아닌 예시규정으로 파악하는 것 때문이다.

3) 芦部信喜『憲法』,第5版,2011年,182~183p.

발언(이는 주로 마이너리티(minority), 소수자 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의미한다)과 당해 집단에 대한 증오가 표명되고 있을 것(증오의 요소)을 요소로 한다.<sup>4)</sup>

본고에서는 일본의 헤이트스피치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규제법률의 제정의의, 주요내용, 문제점, 운용실태에 관하여 재일조선인에 대한 공격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 II. “본방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 해소를 위한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이하, ‘헤이트스피치해소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1) 제정경위와 의의

현재 일본의 법률로써 헤이트스피치를 직접 규제하는 것은 2016년 6월 3일 제정된 소위 ‘헤이트스피치해소법’<sup>5)</sup>이 유일하다. 동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일본에서는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법률이 없었고, 1969년에 채택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이하 ‘UN인종차별철폐조약’)<sup>6)</sup>과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sup>7)</sup>를 통해 규제되고 있었다. 그러나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서 헤이트스피치를 처벌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볼 때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그 보호법익이 외부적 명예나 사회의 평가와 관련되는 것이지만 헤이트스피치가 침해하는 것은 외부적 평가나 명예라기보다는 내부적 명예, 감정 그리고 인격에 직결되는 것으로서, 자신이 속한 집단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정체성의 혼란과 내면적 고통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존엄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이다.<sup>8)</sup> 이것은 헤이트스피치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형법체계에서 규율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이 법률이 제정되기 전 UN인종차별철폐조약의 이행법률 형태로 입법시도한 것은 2015년 5월에 제출한 ‘인종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 철폐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이었다. 그러나 동 법률안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우려된다는 부분 등에 대해 여야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6년 4월 자민당과 공명당은 “본방 외 출신자에 대

4) 成嶋隆, 「ヘイトスピーチ再訪(1)(2)」, 獨協法学92号, 2013年, 745~751頁.

5) 정식 법명은 “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関する法律(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로 법률 제68호로 제정되었다.

6) 일본은 1995년에 체약국이 되었으며 이를 위한 별도의 국내 이행법률을 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7)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소개에 대해서는 류지성 (2016). 최근 일본에서 헤이트스피치 규제에 관한 연구-일본 오사카시의 규제조례를 중심으로-. 〈법제〉, 법제처, 2016년 3월호, pp. 26-47. 참조.

8) 江頭節子, 「「在特会」メンバー等による朝鮮学校の授業妨害訴訟—京都地裁二〇一一年四月二一日判決—」, 「国際人権」二三号, p.76을 류지성 (2016), p.46에서 재인용.

한 차별적 언동 해소를 위한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내용의 다소 다른 법안을 제출하였고 진통 끝에 가결되었다.<sup>9)</sup> 일본이 UN인종차별철폐조약의 체결국이 된 이래 국제사회에서 줄곧 이행 법률의 제정에 대한 지적을 받은 지 21년 만이다.<sup>10)</sup> 이로써 일본은 부족하나마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국내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마련하게 되었다.

## 2. 주요내용

### (1) 법률의 성격

먼저 본 법률을 입법체계상으로 보면 헤이트스피치를 규제할 수 있는 유일한 법률인 형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처벌규정은 빠져있어 형법과의 관계에서 과연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지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다. 그렇다고 하여 헤이트스피치 규제에 관한 기본 법이라고 하기에다 규율사항이 부족하다. 또한 제명에서 보면 헤이트스피치를 규제하기 위한 조직 법제로 볼 수도 있겠으나 그렇다고 조직법적 내용을 갖는다고도 판단되지 않는다. 결국 이 법률은 차별적 언동이 국제인권적 문제라는 점을 선언하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헤이트스피치 해소 노력과 그것을 위한 추진체계를 갖추도록 권고하는 이념적 성격을 갖는 법률로서 제정되었다.

### (2) 법률의 체계와 주요내용

본 법률은 전문과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적 시책, 부칙으로 전체 7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에서는 부당한 차별적 언동은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사태를 방관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접하는 지위에 비추어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 더 이상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제1장은 총칙적 규정인데 먼저 제1조는 법률의 제정 목적으로 “이 법률은 본방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가 중요한 과제임에 비추어 이를 위한 조직과 기본이념을 정하고 국가 등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기본적 시책을 정하도록 하며 이를 추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본방’이란 일본 영토 내를 의미한다.

제2조는 정의조항인데 이 법률에서 ‘본방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란 “본방의 역외에 있는 국가 또는 지역 출신인 자 또는 그 자손으로서 적법하게 거주하는 자에 대한 차별적 의식을 조장하거나 유발할 목적으로 공연히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목적으

9) 이 배경에 대해서 문연주는 “법안성립 자체를 우선한다는 아당의 양보”가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이외 당시 두 법안의 성립과정에 대해서는 문연주 (2017).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에 대한 일본사회의 법제도적 대응, 동국대학교 일본학 연구소 〈일본학〉, 제44집, p. 113면 이하 참조.

10) UN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2014년 7월 “国連自由権規約委員会による日本政府報告審査における最終見解” 및 같은해 8월의 “国連人種差別撤廃委員会による同審査における最終見解”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URL: <https://www.mofa.go.jp/mofaj/files/000054774.pdf> 및 <https://www.mofa.go.jp/mofaj/files/000060749.pdf> (최종검색일 2019. 9. 9.)

로 고지하거나 본방 외 출신자를 현저히 모독하는 등 본방의 역외에 있는 국가 또는 지역출신자임을 이유로 본방 외 출신자를 지역사회에서 배제할 것을 선동하는 부당한 차별적 언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4조는 차별적 언동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과 시책을 지방공공단체가 추진하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양자는 각각 역할을 분담하도록 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은 기본적 시책에 관한 사항인데 국가에게는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지방공공단체에 대해서는 ‘노력할 의무’ 수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아마도 법률에서는 국가의 의무를 직접 정하고 지방에 대해서는 조례 등을 통하여 자율적인 규제를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의도가 엿보인다. 일본 헌법학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근간이어서 규제법은 최소 한도의 범위에 머물러야 한다는 인식을 법률에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sup>11)</sup> 이와 관련하여 제5조는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에 차별적 언동에 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도록 하며, 제6조는 차별적 언동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과 필요한 대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 제7조는 이러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 필요성을 국민에게 주지시키고 계발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목적달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표1〉 헤이트스피치해소법 주요내용

전문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더 이상 일본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다는 이념적 지향	
제장 (총칙)	제1조	법의 제정목적
	제2조	“본방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정의
	제3조	국민의 책무로서 본방 외 출신자에 대한 차별적 언동 없는 사회 만들기에 기여할 것을 규정
	제4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로서 차별적 언동 해소를 위한 대책과 시책 추진의 의무를 규정
제2장 (기본적 시책)	제5조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차별적 언동 해소를 위한 상담체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제6조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차별적 언동 해소를 위한 교육 실시
	제7조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차별적 언동 해소를 위한 홍보와 계발활동을 실시
부칙	대책에 관하여는 실태를 파악하여 필요에 따라 검토할 것	

### 3.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의 문제점

상술한 바와 같이 헤이트스피치를 주된 대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일본 법률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서 헤이트스피치법이 제정된 것은 그 자체로서 일정 부분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이 법률은 몇 가지 이유로 실효성 등에 문제점이 있다.

11) 실제로 이 법률을 제정할 당시 여야 간의 찬반 입장을 보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우려하여 반대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논리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1) 법적 성격의 모호성

첫째, 이 법률의 성격과 관련하여 당초 제정 취지인 규제법으로서의 핵심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이 법률은 규제법의 실효성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내용인 금지조항과 벌칙조항을 담고 있지 않은 채 조직법적 내용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법이라고 하기에 도 직접적으로 ‘조직’을 법에서 정하지 않은 채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에 조직을 갖추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사실상 반쪽짜리 규제법, 조직법에 불과하다. 즉, 이 법률이 근본적으로 지향하고 규율하고자 하는 내용이 서로 정합성이 떨어진다. 그렇다보니 제정의도가 법률의 내용에 명확히 반영되지 못한 채 차별적 언동을 금지한다는 이념적 지향을 선언한 법률에 그쳤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 (2) 보호대상자의 한계성

둘째, 이 법률은 규제대상을 “본방 외 국가 또는 지역 출신자 또는 그 자손”으로 ‘적법하게 거주하는 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으로 정의한다. ‘본방 외 국가나 지역’은 일본 영토 외 출신자로서 국적을 불문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적법하게 거주하는 자’란 불법체류자나 일본 내 거주하는 자 가운데 그 체류 자격에 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자를 제외하는 것으로서 법 해석상 이들은 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 규정은 오키나와 출신자나 아이누족 등은 헤이트스피치의 보호영역 밖에 위치하도록 만든다.<sup>12)</sup> 이들에 대한 헤이트스피치가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정의규정에서 “적법하게 거주하는 자”를 제외할 것을 여당측이 수용하지 않은 과정을 보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 우려라는 논리보다는 일본 내 거주하는 일부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와 정치적 영향이 여권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 (3) 실효성 부족

이 법률의 주된 내용은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헤이트스피치 해소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에 대해서는 일부의 의무조항을 가미한 데 비해 지방공공단체에 대해서는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점도 매우 미진한 대목이다. 제2장 기본적 시책 제5조에 보면 상담체제의 정비에 관해 “국가는.....필요한 체제를 정비한다”고 규정한 데 비해 “지방공공단체는.....필요한 체제를 정비하도록 노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제6조도 “국가는.....교육활동을 실시함과 동시에 필요한 대책을 실시한다”고 하는 데 비해 “지방공공단체는.....교육활동을 실시함과 동시에 필요한 대책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조도 “국가는.....계발활동을 실시함과 동시에 필요한 대책을 실시한다”고 하

<sup>12)</sup> 앞의 문연주 (2017).



는데 비해 “지방공공단체는 홍보의 계발활동을 실시함과 동시에 필요한 대책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노력한다”는 규정은 말 그대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규범화되기 전 단계에 머무르는 것으로 지방공공단체에 이를 강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지방공공단체에 대해서는 조례 등을 통한 자율적 규제, 지방자치를 존중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헤이트스피치를 동반한 시위가 주로 도로를 점거하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도로교통법과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는 절차를 통해야 한다는 사실에서 보면 해당 경찰서장과 해당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헤이트스피치 해소법에서 규정하는 지방공공단체의 노력의무는 사실상 지방에 대해서 법률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법률 어디에도 헤이트스피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은 큰 문제점이다. 금지규정이 없기 때문에 벌칙규정을 둘 수도 없다. 이 법률은 차별에 관한 일반적 금지를 정하는 포괄적 법률도 아니고 그렇다고 개별사안을 중심으로 규율하는 법률이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서로 맞지 않다는 점은 상술한 바와 같다. 따라서 이 법률은 실효성이 부족하고 법률의 근본적인 성질에 대한 지향성이 불명확한 채 실제로 헤이트스피치를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미진하다. 즉, 이 법률을 직접적인 근거로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금지와 처벌을 가하기는 어렵다. 단지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차별 시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주문하는 데 그치고 있다.

#### (4) 규율내용의 빈약성

마지막으로 이 법률의 내용적 빈약함을 문제로 들 수 있다. 가령, 2015년 5월 민주당 주도로 제출한 “인종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철폐를 위한 시책추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종차별철폐법’)을 보면 “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에 관한 정의에서 인종, 피부색, 세계 또는 민족 혹은 종족적 출신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호영역을 광범위하게 잡고 있었다. 물론 이 부분은 포괄적 차별시정을 위한 목적의 입법인가 아니면 개별적 차별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목적의 입법인가에 따라 규제대상 및 목적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동법률안은 ‘헤이트스피치 해소법’에서 규율하는 차별적 언동을 모두 규율할 수 있는 법률이었다는 점에서 비교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관련하여 동법률안은 규율태도에 있어서도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책무를 따로 정하지 않았으며, 정부의 차별시정을 위한 재정상의 조치조항, 국회 연차보고서 제출의무, 다양한 문화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최근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유튜브 등을 위시한 인터넷 공간에서 헤이트스피치가 발생한 경우 사이트운영자의 자율적 규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또한 내각에 ‘인종 등 차별방지정책심의회’를 총리가 직접 임명하도록 하여 권위 있는 기구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는 점을 보아도 헤이트스피치해소법보다 강화된 내용을 규정하고자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sup>13)</sup> 이 법률안의 주요한 규율내용을 <표2>에 정리했다.

<표2> 인종차별철폐법의 주요내용

장	조	주요내용
제1장 (총칙)	1	법의 제정목적
	2	‘인종 등을 이유로하는 차별’의 정의
	3	인종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 금지 등의 기본원칙
	4	직업, 학교, 지역, 기타 모든 사회분야에서 인종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 금지
	5	차별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
	6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차별방지 시책 추진책무
	7	정부의 기본방침을 정할 의무
	8	정부의 재정상의 지원책무
	9	정부의 연차보고서 국회제출의무 (매년)
제2장 (기본적 시책)	10	상담체제의 정비
	11	다양한 문화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12	차별방지를 위한 계발활동
	13	인권교육 실시 의무
	14	국내외에서 조직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정리 및 제공등의 의무
	15	인터넷 공간에서의 헤이트스피치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 사업자 지원
	16	지역사회활동 지원
	17	관계자 의견 반영
	18	차별실태조사의 실시
19	차별관계자의 의견을 시책 수립에 반영할 의무	
제3장 (인종 등 차별방지정책심의회)	20	인종등 차별방지정책심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
	21	심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심의회 자료 제출 요구 근거
	23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의 정령에 위임 근거

(5)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추상성

본 법률은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소위 헤이트스피치로 간주하여 규제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헤이트스피치'와 같은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가 문제로 남는다.

일본에서 '헤이트스피치'란 일반적으로 역사적으로 차별받거나 억압받아온 집단에 대해 그 차별을 더욱 조장하는 발언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특정집단에 대한 증오를 표명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sup>14)</sup> 따라서 헤이트스피치는 제법 광범위한 개념인데 비해 '부당한 차별적 언동'은 '차별적 표현' 행위 '부당'할 것까지 요구하는 개념으로 무엇이 부당한 것인지에 대한 해석을 동반해야 하므로 규제범위가 한층 좁아진 것이라 하겠다.

보다 구체적으로 헤이트스피치 해소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본방의 역외에 있는 국가나 지역 출신인 자 또는 그 자손으로서 적법하게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 '차별적 의식을 조장하거나 유발할 목적을 가지고, '본방의 역외에 있는 국가나 지역 출신인 것을 이유로, '본방 외 출신자를 지역 사회에서 배제하고자 선동할 것'이라는 4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헤이트스피치와 비교해 볼 때 규제대상은 매우 좁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헤이트스피치를 하는 자의 입장에서 이 요건의 일부를 피하여 데모를 할 여지가 얼마든 남아있는 것이다. 이 법률의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가이드라인이 작성되고 있다.<sup>15)</sup>

III.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효과 검토

1. "오사카시헤이트스피치의 대처에 관한 조례"(이하, '오사카시 조례')의 검토

오사카시는 츠루하시(鶴橋) 지역을 중심으로 7만여 명의 재일교포가 거주하는 도시로서 그간 일본 보수우익단체의 혐한시위 주무대의 한 곳이었다. 재특회를 비롯한 이들의 헤이트스피치가 재일교포뿐만 아니라 일본의 일반시민에게도 혐오감을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등 비판이 거세졌고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오사카시의 대응으로 일본에서 최초로 헤이트스피치를 규제하는 조례가 2016년 1월 시의회에서 가결되었다. 이는 관련 법률의 지속적인 제정시도가 무산된 사례에 기초해 볼 때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평가할 수 있다. 오사카시 조례는 총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목적과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정의, 시민에 대한 계몽활동, 헤이트스피치 확산방지 및 인식 등의 공표와 헤이트스피치 심사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 조례 또한 벌칙조항은

13) "인종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철폐를 위한 시책추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일본 참의원 홈페이지 참조. URL: [http://www.shugiin.go.jp/internet/itdb\\_gian.nsf/html/gian/honbun/houan/g18902007.htm](http://www.shugiin.go.jp/internet/itdb_gian.nsf/html/gian/honbun/houan/g18902007.htm)(최종검색일: 2019. 9. 9.)

14) 成嶋隆「ヘイトスピーチ再訪(1)(2)」, 獨協法学92号, 2013年, p.745~751.

15) 가령, 가와사키시의 "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関する法律に基づく「公の施設, 利用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규정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지만 헤이트스피치를 제도적으로 정의하고 법제화할 수 있는 내용을 최초로 담아 다른 조례에 모범을 보였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 2. 도쿄도 “올림픽헌장에 따른 인권존중 이념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조례” 검토

2018년에 도쿄도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맞이하여 “올림픽헌장에 따른 인권존중 이념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는 헤이트스피치 해소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차별적 언동해소를 위한 지방공공단체의 노력의무에 따라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규제를 담았다. 또한 성적소수자 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모든 유형의 차별을 금지한다.

이 조례는 제1조에서 “도쿄도가 계발, 교육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올림픽헌장에 따른 인권존중의 이념이 시민사회에 넓게 침투한 도시를 만들기”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헤이트스피치해소법에 따라 제2조에서 인권존중을 위한 조직을 추진하도록 하고 도내에 속한 시, 정, 촌이 관련 조직을 만들 때 협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시설의 이용제한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도지사는 문제가 된 표현활동의 개요를 공표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2016년에 제정된 오사카시 조례와 헤이트스피치 해소법에 이어 제정된 조례이지만 광역지자체 가운데는 최초로 헤이트스피치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도내에 속한 기초지자체에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성격이 있는 만큼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성적소수자를 중심으로 헤이트스피치 대상에 대한 한층 넓은 보호범위를 설정하고 도민과 시민 등의 책무도 선언적으로 규정한 데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도쿄올림픽을 대비해 나타난 제정취지상의 한계와 별치조항을 담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실효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 3. 가와사키시 “차별없는 인권존중도시 만들기 조례” 검토

가나가와현(神奈川県)에 위치한 가와사키시(川崎市)는 한인타운이 있는 곳으로 주로 재일교포를 상대로 한 헤이트스피치 시위가 잦았던 곳이다.<sup>16)</sup> 따라서 가와사키에서는 혐한시위,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규제론이 줄곧 문제되었던 바 2019년 6월 23일 시는 오사카시의 조례와 헤이트스피치

16) 가와사키시에서의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일본 언론의 보도는 산케이신문 인터넷판(URL: <https://www.sankei.com/premium/news/181106/prm1811060001-n1.html>) 그리고 아사히신문 인터넷판(URL: <https://www.asahi.com/articles/ASL636DGBL63JULOB00J.html>)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검색일: 2019. 9. 8.)



해소법 제정 이후 최초로 벌칙조항을 담은 조례안(가칭 '차별 없는 인권존중조시 만들기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시내의 공공장소에서 헤이트스피치를 하거나 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시장은 '차별방지대책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①위반행위를 중지하도록 권고하거나 ②2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중지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③3회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자의 이름, 단체명 등을 공표하고 시가 피해자를 대신해 검찰청이나 경찰에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지 여부를 재판소(법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는 구조인데 당해 문제의 표현행위가 헤이트스피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에서 하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일본 헌법학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절대금지로서 사전검열을 제한하고 있으며, 사전검열의 요건 가운데 핵심적인 사항은 검열의 주체가 행정부일 것을 요한다는 논리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sup>17)</sup>

이와 관련하여 가와사키시는 이미 2018년에 헤이트스피치의 발생 우려가 강한 경우에 공원과 같은 공적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지침)을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여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았다고 밝히고 있으나 보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벌칙을 담은 내용의 시조례가 필요하다고 보아 조례안을 마련했으며 당해 조례안을 2019년 12월에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시장의 헤이트스피치 중지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경우에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행위자를 벌하는 동시에 행위자가 법인인 경우 이에 대해서도 벌하도록 양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헤이트스피치해소법 제4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이 조례안에서는 '본방 외 출신자에 대한

17) 辻村みよ子『憲法』第4版,日本評論社,2012年,p.212.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지되는 장소와 행위의 태양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의 이용 허가 기준, 인터넷상에서의 표현활동에 관한 확산방지조치와 규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또한 헤이트스피치를 하는 조직이나 개인에 대한 규제로서 시장의 명령, 공표 등에 대하여 심의기구인 '차별방지대책등심사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도 담고 있다.

## IV. 일본 헤이트스피치 규제제도에 대한 평가

### 1. 제정의 의미

이상의 순서에 입각해 보면 일본의 경우 지자체의 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그 법률에 따라 다시 조례에서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규정하는 흐름을 읽을 수 있었다. UN인종차별철폐조약 체결국이면서도 특정집단에 대한 헤이트스피치가 사회적 차별문제로 부각된 일본에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그간 여러 차례 관련 규제법 제정을 권고하였다. 이에 비하면 매우 늦은 감이 있으나 그나마 헤이트스피치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 제정되고 지자체가 이에 따라 조례로 규제를 가하는 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법률에서 헤이트스피치를 직접 금지하는 규정과 벌칙조항이 없다는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그나마 지자체의 조례는 점점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벌금을 규정하기에 이르렀다는 데에서 한층 더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 2. 법률 및 조례제정에 따른 변화상

2017년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일본 내의 혐한시위나 헤이트스피치 시위는 1,000여 건으로 집계되었으나 일본정부, 지자체, 시민사회가 나서서 법률제정과 조례제정을 통한 제도적 규제를 통해 시위는 잦아든 양상을 보인다. 가령, 법무성은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지자체 70여 곳에 배포하였고, 지자체는 의견표명의 형식으로 정부에 규제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시위를 주도하는 우익단체는 시위 전 참가자들에게 헤이트스피치 해소법을 준수하면서 시위할 것을 지침처럼 고지하기도 하였으며, 시위의 양상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헤이트스피치보다는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시위 양상의 변화는 법률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법률의 영향을 받은 조례와 지자체의 강화된 운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즉, 시위참가자는 조례에서 정한대로 시위자에 대한 공표제도를 피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법률에서 규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조례에서도 헤이트스피치 규제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시민사회의 참여와 조직정비를 정했다는 측면에서 헤이트스피치를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향해 진전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 3. 과제


다만 상기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헤이트스피치 규제제도는 몇 가지의 과제와 문제점을 남기고 있다.

먼저 법률에 직접적인 금지규정과 벌칙조항을 담아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규제법을 제정하고 보자는 정치권의 입장에 따라 반쪽짜리 입법이 되었으나 이 법의 제정목적과 취지에 따라 완성된 법률이 되기 위해서는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정의를 넓히는 동시에 헤이트스피치 금지와 벌칙을 입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률과 조례의 내용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헤이트스피치를 할 수 있는 편법적 방법의 헤이트스피치를 규제하는 입법기술을 고안해야 한다. 실제로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과거를 향수한다는 뜻으로 욕일기를 들고 행진한다든가, 강연회를 개최한다든가, 반한 여론을 부추기는 기고나 언론플레이 같은 행위가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경우 헤이트스피치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감하게 규제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나타난다.<sup>18)</sup> 관련하여 이것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인권 제한과 보호의 관계에서 양자의 조화관계를 모색해야 하는 법리적 과제를 남기고 있다.

운용 측면에서 보면 법률 제정 이후 실제 시위현장에서 일본의 경찰은 혐한 시위에 참가한 자에 대해 과격한 행동을 한 경우에도 체포를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 시위자를 막아서는 상황을 보이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법률의 취지와 조례의 내용대로 직무를 집행해야 한다. 2016년 한일의원친선연맹에서 아베 총리는 “헤이트스피치는 일본의 수치”라고 의견을 표한 바 있는 만큼 헤이트스피치 해소법은 보다 강화된 내용을 규정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즉, 이 법률이 가지는 한계로 인하여 헤이트스피치 규제가 불완전하고, 종전처럼 공공시설사용의 불허가 처분을 통해 헤이트스피치를 규제함으로써 편법적 시위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셈이다.

도쿄도가 제정한 조례에 나타나듯 ‘2020 도쿄올림픽’을 맞이하여 사회 전영역에서의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는 노력을 입법으로 보여야 진정성을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과 같은 UN인종차별철폐조약의 체약국으로서 재일본 국민과 재외동포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조약의 준수, 올림픽정신과 헤이트스피치규제법, 각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법집행을 일본 정부에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 

18) 실제로 필자가 일본에서 연구하면서 일본의 사법문화를 느꼈을 때 최초로 뭔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망설이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령, 최고재판소의 위헌판단이 극소수라는 점도 소위 “얼굴없는 재판관”이라는 논리에 따라 색다른 판결이나 주목받는 판결을 내는 것에 대한 부담을 나타내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뉴스 속의 사진 : 페이스북에 공개된 사진을 허락 없이 보도에 사용할 수 있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나57023 판결

한위수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요즘 같은 영상의 시대에는 뉴스도 영상 없이 존재하기 힘들다. TV방송의 뉴스는 그 자체가 전부 영상이며, 인터넷뉴스나 신문기사에도 사진이 들어가야 독자들의 눈길을 더 끌 수 있다. 하지만 뉴스기사라고 함부로 타인의 사진을 사용하다가는 초상권과 저작권이 문제될 수 있는바, 여기서는 지면관계상 저작권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한다.

저작권이란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하여 그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케 하고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이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등 참조).

한편,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한 권리'이므로 '창작성'이 전혀 없는 경우(예컨대 전화번호부)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시나 소설, 음악, 미술 등과는 달리 사진은 기본적으로 피사체의 형상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어서 창작성이 없는 경우(특히 증명사진)가 많으므로 저작권이 인정되는 사진인지부터 문제된다.

우리 대법원은 사진에 대하여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등).

그리하여, 광고용 카탈로그를 위하여 햄 제품 자체만을 찍은 사진은 비록 전문 광고사진작가가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만한 창작적 노력 내지 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고주파 수술기를 이용한 수술 장면 및 환자의 환부 모습과 치료 경과 등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사진들 역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가 있다.

반면, 프리랜서 사진작가가 국내의 아름다운 자연풍경을 촬영하여 홍보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해 놓은 사진들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등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뚜렷이 반영되어 있어 예술적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22. 선고 2005나3518 판결)가 있다.

한편, 보도를 함에 있어 관련 사진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을 것인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전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리하여, 저작권법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조항을 두고 있다.

먼저 저작권법 제26조는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이라는 표제 아래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란 표제 아래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과연 어느 정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가가 문제된다.

우리 대법원은,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한 월간지가, 일본 사진전문 주간지에 우리나라 사진작가의 누드사진이 실렸다고 보도하면서 그 기사내용과 함께 그 사진 일부를 인용한 사안에서, 게재한 사진들이 칼라로 된 양질의 사진이고 잡지지면 전면크기의 것도 있는 등 전체적으로 3면의 기사 중 비평보다는 사진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화보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들어, “위 사진들은 보도의 목적이라기보다는 감상용으로 인용되었다고 보이므로 결국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가 있다.

끝으로 저작권법 제35조의3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란 표제 아래 제1항에서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sup>1)</sup>

따라서, 뉴스 속의 사진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우선 그 사진에 창작성이 있어 저작권이 인정되는지를 가리고, 저작권이 인정된 후에는 저작권법 제26조의 ‘시사보도에 부수되는 이용’이나 제28조의 ‘보도를 위한 정당한 이용’인지, 또는 제35조의3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게 된다.

이런 점을 유념하며 제목에 게재된 판례의 사실관계를 보자.

(1) 원고는 다큐멘터리전문 사진작가로서 A 교회가 쿼어 축제(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들의 축제)에 참가하는 모습을 촬영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축제에 게시된 A 교회의 깃발과 A 교회의 목사 B가 축제에서 발언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그 사진이 A 교회 페이스북과 B 목사의 페이스북에 각 게시되었다.

(2) 피고는 일간신문사로서 인터넷판 ‘미션’ 섹션에 “B 목사, 잘못된 신론 구원론 갖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위 사진들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서 ‘A 교회 페이스북 캡처’ 또는 ‘B 목사 페이스북 캡처’라고 표기하였다.

(3) 원고는 위 기사로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위 사진에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저작권법 제 28조의 ‘보도를 위한 정당한 이용’ 또는 제35조의3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제1심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7가소61059 판결)에 이어, 항소심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나57023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으며,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원고는, A 교회의 깃발과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깃발이 함께 걸려있는 모습을 선정하여 교회 이름이 제대로 드러나도록 깃발이 펼쳐지는 시간대와 각도를 선택하여 촬영함으로써 촬영자의 창작적인 고려가 나타나 있고, B 목사가 무지개 색깔의 목도리를 걸치고 부드러운 표정으로 발언하는 순간을 선택하여 촬영함으로써 B 목사가 성소수자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발언을 하는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한 촬영자의 창작적인 고려가 나타나 있어, 저작권이 인정된다.

(2) 페이스북의 사진을 공개로 설정했다라도 언론사의 사용까지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다수의 언론사가 페이스북 캡처라는 형태로 출처를 밝히고 기사를 서술한다고 하여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을 캡처해서 기사를 작성하는 공정한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기사의 주된 내용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공공의 이익보다는 B 목사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 등을 비판하는 피고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이다. 피고의 B 목사에 대한 비판적인 논조를 뒷

1) 같은 조 제2항은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받침하기 위한 증거로 사진이 사용된 이상 그 비중이 결코 적지 아니하고, 피고가 신문판매를 통한 이윤추구나 인터넷 광고수익을 얻는 상법상 회사로서 이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위 판시 중 (1)부분 즉 저작권을 인정한 부분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단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지극히 타당해 보이고, (2)부분 역시 타당해 보인다. 위 판결이 지적하는 것처럼, 설령 많은 언론사가 페이스북 캡처라는 형태로 출처를 밝히고 기사에 사용하는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을 캡처해서 출처만을 밝히고 기사에 사용하는 것이 ‘공정한’ 관행이라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3)부분 설시는 아쉬움이 있다. 그 중에서도 피고가 신문판매로 이윤을 추구하고 인터넷 광고수익을 얻는 상법상 회사라고 하여 사진사용에 영리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영리목적이 있다면 허락 없는 사용이 정당한 이용으로 인정될 범위는 극도로 좁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그 사진이 기사 내용에 직접 관련 있고 기사에 부종하는 것이라면 사진 자체로서 바로 신문판매부수나 인터넷 클릭수를 높이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는 한, 사용에 영리목적이 있다고 선불리 인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나아가 위 사진은 원고가 이미 촬영대가를 지급받았고 화보로 출간하거나 유상판매 등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뉴스에서의 사용이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저작권법 제35조의3 제2항이 규정하는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유형의 사진 사용을 저작권 침해라고 인정함에는 극히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기사의 내용에 불만이 있지만 기사내용을 문제삼기 어려운 경우에 화풀이 수단으로 악용되어 보도의 자유를 제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여하튼 언론사로서는 뉴스에 타인의 사진을 사용할 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단순한 증명 사진이 아니라 전문작가가 촬영하여 예술성이 있는 사진이라면 저작권도 감안하여야 한다는 점을 이 판결이 엄중하게 깨우쳐주고 있다. 🌐



## 탈진실 사회와 저널리즘의 역할

이재경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커뮤니케이션 생태계의 모습을 보며 이제 한국도 탈진실 사회가 되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Post-truth Society’를 번역한 말이 탈진실 사회다. 옥스퍼드 사전에 따르면, 탈진실(Post-truth)이란 표현은 1992년 스티브 테지치(Steve Tesich)란 세르비아계 미국작가가 ‘네이션(The Nation)’이란 잡지에 기고한 에세이에서 처음 사용했다([www.wikipedia.org](http://www.wikipedia.org)).

### 탈진실 사회의 의미

이 표현은 주로 정치행위와 미디어의 상호작용을 묘사하는 상황에서 사용돼 왔다. 이 개념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는 발화자의 말과 그 말이 지칭하는 현실세상의 관계가 완전히 독립적일 수 있다는 인식이다. 다시 말하면, 누가 무엇인가를 말하거나 주장하는 내용과 그 말의 진실성, 또는 그 말이 지칭하는 현실에 대한 정확성은 관계가 없다는 의미다. 현실은 현실로 존재하지만, 언어표현을 통해 드러나는 현실에 대한 인식은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마음대로 구성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다르게 인식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현실의 실체에는 관심이 적고, 자신들이 공유하는 인식에만 집착하기 때문이다.

한 매체의 기자가 걸어온 전화 때문에 이러한 생각이 시작됐다. 전화의 내용은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실시간 검색어 전쟁에 관해서였다. 저널리즘 연구자 관점에서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질문의 요지였다. 이 기자가 제시한 검색어들은 “조국 힘내세요”, “조국 사퇴하세요”, “근조 한국 언론”, “가짜뉴스아웃”, “한국 언론 사망”, “정치검찰아웃” 등 이었다.

기자의 얘기를 듣고 들여다 본 온라인 세상에서는 조 후보자를 지지하는 세력과 그의 임명을 반대하는 세력이 서로 여론의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 그야말로 치열한 상징적 전쟁 (Symbolic war) 을 벌이고 있었다. 안타까운 현실은 대부분의 주요 매체들이 이러한 수사적 전쟁에 끼어들어 같이 전투의 판을 키우고 있는 점이었다.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전쟁판에 지상파 방송과 주요 일간지, 디지털 매체가 예외 없이 상징 전쟁의 하부행위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었다. 언론의 이러한 행태는 주로 특정인이 무슨 말을 했는가를 전하는 방식으로 드러났다. 박용진 의원, 원희룡 지사,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어느 조국 후보자의 친구 등이 개인 SNS에 쓴 내용이나 방송대담에서 했던 말들이 검증 없이 주요 매체를 타고 확산됐다.

## 저널리즘의 표피화와 부정적 기여

이는 매우 위험하고 실망스런 상황이었다. 기자의 역할은 전개되는 사건(Event)의 뿌리를 의심하고, 질문하고, 파고들어, 무엇이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내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또 그렇게 드러난 현실의 뿌리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독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민주적 의사결정체도가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실시간 검색어 전쟁을 다루는 기자들에게서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들은 그저 실시간 검색어 전쟁이라는 흥미로운 현상을 표피적으로 최대한 빨리 전달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었다. 이성적 토론이 가능한 사회가 아니라 극단적 진영세력들에게 원초적 격정을 촉발하는 보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 사회가 탈진실 사회로 가는 데, 안타깝게도 저널리즘이 강력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질문한 기자에게 불편할 수 있는 답을 두 가지로 나눠 건넸다. 첫 번째 답은 실시간 검색어 논쟁을 기사로 다루지 말라는 부탁이었다. 그렇게 할 경우, 실시간 검색어 작업을 주도하는 세력의 상황논리를 언론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답은 탐사 보도에 대한 부탁이었다. 기자들이 실검전쟁이 어떻게 기획되고 수행되는지를 추적해 기사로 써달라고 당부했다. 어디서, 누가 이 일을 시작했는지, 동원된 사람은 몇이나 되는지, 혹시 인공지능이 사용되지는 않았는지, 매크로 프로그램이 동원된 것은 아닌지, 포털에서는 이러한 여론조작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취재해 보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언론 환경에서 이러한 보도가 실현되기에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한다.

## 탈진실 사회를 만드는 요인들

무엇이 우리사회의 탈진실화를 부추겨왔는가? 지난 30여 년, 현업과 학계를 오가며 정리해온 생각을 따라가 보면, 크게 세 가지 요인이 한국 사회의 탈진실화를 부추겨온 것으로 판단한다.

첫 번째 원인은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지도자들의 도구적 언론관이다. 한국의 대통령들은 예외 없이 신문과 방송을 홍보의 도구로 여겨왔다. 권력을 잡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공영방송의 사장을 자기 사람으로 임명하는 일이다. 정부의 직접적 영향력 하에 있는 연합뉴스와 서울신문 등의 경영진을 선거과정에서 도움을 주었던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민주화 이후만 보더라도, 이러한 행태는 정부가 보수적 성격이건, 진보적 성격이건 다르지 않았다. 지난 30여 년, 그러한 과정이 반복되며, 관련 매체에서 일하는 기자들은 독립적 판단의 기능을 키울 수가 없었다. 신문 독자와 방송 시청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정부 쪽 매체들의 친정부 편향성을 감안하고 뉴스를 소비해야 했다. 그 결과는 매체 지형 편향성의 구조화다. 이러한 구조적 조건은 독립적 매체의 존재를 불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미디어 운영 관행은 기자의 뉴스에 대한 판단이 구조적으로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는 대중적 인식을 고착시켜왔다.

우리 사회를 탈진실화로 끌고 가는 두 번째 원인은 민주화와 함께 극심해진 언론의 정파화 추세다. 권위적 군사정부 시대가 지나며, 한국 언론계는 진보와 보수의 양극화 시대가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대 한겨레·경향신문, 지상파 대 종편 등 매체의 소유구조에 따라 보도 성향이 극명하게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남북 문제와 노동 문제, 정치개혁과 경제 쟁점 등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 지극히 갈등적인 보도 양태를 유지해 왔다. 신문은 사실과 칼럼 등 오피니언 면에서 각자의 색깔을 최대한 강력하게 드러내는 편집전략을 취해왔고, 텔레비전은 시사 프로그램의 패널을 초청하는 과정에 진보와 보수의 논객들을 고정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거의 모든 사안이 두 개의 극단적 관점으로 논의되는 구조를 일상화시켰다. 민주화 이후 30여 년, 이러한 사회적 토론구조가 유지된 결과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게 된 탈진실 사회가 아닌가 한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사안이 좌와 우, 진보와 보수로 상대화됨으로써 모든 시민이 동의하는 현실에 대한 통일된 인식은 거의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논의 구조가 고정된 느낌이다.

세 번째 원인은 디지털 미디어와 모바일 매체의 급격한 보급이다. 이러한 매체구조의 변화는 언론의 수익 창출구조를 트래픽 중심으로 바꿔버렸다. 포털이나 언론사 가릴 것 없이 커뮤니케이션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은 이제 방문자를 많이 확보해야 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리는 시장구조에서 생존을 건 투쟁을 하는 처지다. 그리고 그 동안의 데이터 분석 결과 온라인 사이트에 방문자를 끌어 들이는 가장 손쉬운 매개체로 자극적인 뉴스만한 게 없다는 것이 일반화된 인식이다. 이러한 매체 수익구조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낚시성 뉴스의 폭증 현상을 불러왔다. 다시 말해,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그 기사가 대중의 관심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과 형식적 특성을 갖추었는지가 가장 중

요한 고려사항으로 자리잡았다는 말이다. 거기에 앞서 예시한 실시간 검색어 전쟁 같이 디지털 세상에서만 가능한 여론 조작 시도가 추가된다.

디지털 세상의 뉴스 문법은 기사의 완결성, 정보의 진실성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지금 쓰고 있는 기사가 얼마나 읽는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는지, 아니면 정파적 관심을 부추기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뉴스의 흐름을 보면, 위에 제시한 세 가지 요인이 모두 고르게 작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탈진실 사회는 왜 문제인가

다음은 중앙일보 김진국 대기자가 지난 9월 3일 신문에 쓴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는 칼럼의 시작 부분이다.

“조국 인사청문회에서 진실이 의미가 없어졌다. 비난하는 쪽이나 반박하는 쪽이나 서로 ‘진실’(fact)을 외친다. 하지만 더는 진실에 관심이 없다. 편을 갈라 어떻게든 이기겠다는 목표뿐이다. 말꼬리를 잡고, 약점을 후벼파고, 상대측의 신뢰를 공격한다.”

탈진실 사회의 단면을 이보다 잘 설명하기 어렵다. 김진국 대기자는 이어서 말한다. “조 후보가 임명되고 말고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공동체가 공유하는 상식, 가치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 진실이 무시되는 커뮤니케이션 생태계에서는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무제한의 다툼이 있을 뿐이다. 패트릭 모이니헌 전 미국 상원의원은 “우리는 각자의 의견을 가질 자유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는 각자만의 사실을 가질 자유는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어느 집단이든 생각과 별도로 존재하는 현실을 마음대로 정의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이는 “의견은 자유지만, 사실은 신성하다”고 말한 영국의 언론인 C. P. 스콧 (Scott)의 생각과도 일맥 상통한다.

저널리즘은, 이러한 생각의 줄기를 따라가면, 모두가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진실의 바닥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본령으로 삼아야 한다. 특정 집단의 집단사고를 마치 현실인 양 확대 재생산하는 일에 몰두하게 되면, 우리의 공동체는 영원한 갈등의 늪에 갇히게 된다. 특히 국가 안보에 관한 내용이나, 반일감정 등에서 드러나듯이 국제관계를 다루는 기사가 진영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순식간에 지극히 위험한 처지에 빠질 수도 있게 된다. 탈진실 사회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 한국 언론과 기자들이 너무 늦지 않게 각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스웨덴의 혐오표현 규제와 위협받는 민주주의

김민주 스웨덴 룬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석사과정



## 들어가며

올해 초 스웨덴에서는 91살 남성이 무슬림을 저격하는 글을 페이스북 그룹에 올렸다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12,000명의 멤버가 있는 페이스북 그룹에 “무슬림은 근친 교배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올렸고 이 글은 51주 동안 게시되었다. 크리스티안스타드 지방법원은 이 발언을 특정 민족에 대한 혐오표현으로 규정하고, 조건부 형과 함께 6,500 크로나(약 700달러)의 벌금형을 내렸다(Bergquist, 2019).

같은 해 6월, 52살 패트릭 마르크스트룀(Patrik Markström)씨도 법원으로부터 유죄선고를 받았다. 그가 운영하는 페이스북 그룹(Stå Upp För Sverige)에 게시된 인종 차별적 발언의 댓글을 지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트룀씨는 댓글을 보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에스킬스투나 지방법원은 논란이 된 총 8개의 댓글 중, 6개의 댓글은 보지 않았을 확률이 매우 낮고, 나머지 2개의 댓글은 보고도 수수방관했기 때문에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집행유예와 19,200 크로나(약 2,070 달러)를 벌금으로 선고했다(The Local, 2019).

최근 스웨덴은 위와 같이 혐오표현 관련 범죄가 급증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스웨덴의 한 미디어 조사기관<sup>1)</sup>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혐오표현 범죄의 수가 2배 증가했다고 한다. 이미 2017년에만 페이스북 내 혐오발언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것이 18건이었고, 그 수가 2013년 대비 4배 증가한 것으로 보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hatterjee & Törnkvist, 2018; Daily Sabah, 2019).

이처럼 스웨덴 내 혐오표현이 최근 들어 급증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이하에서는 혐오표현이 급증하게 된 배경, 혐오표현에 대한 사법적·정책적 규제, 혐오표현 규제를 둘러싼 논란, 그리고 스웨덴의 사례가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 1. 스웨덴에서 혐오표현이 성행하게 된 배경

스웨덴 내 혐오표현이 급증한 데는 2015년에 있었던 난민위기로 인해 확산된 반(反)난민, 반(反)이민정서<sup>2)</sup>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스웨덴은 친(親)난민정책을 펼치면서 유럽 국가들 중 자국민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는 나라<sup>3)</sup>가 되었다. 그러나 명확한 대책 없이 난민을 수용한 나머지 난민범죄와 테러로 한바탕 흥역을 치러야 했다. 그 과정에서 망명을 거부당한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남성이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 중심가에서 일으켰던 트럭 테러 사건은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 논쟁의 가장 큰 이슈가 되었다(옥기원, 2018). 이와 같은 부정적 상황들이 발생하자 민족주의적 성향의 네오-나치를 지지하는 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백인우월주의자들의 노르딕 저항운동(Nordic Resistance Movement)이 나라 전체에 일어나고, 극우정당인 스웨덴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 제3당을 차지했다.<sup>4)</sup> 한 조사<sup>5)</sup>에 따르면 2016년에 일어난 네오-나치의 활동은 3,064회로 2008년 이후 최고를 기록할 정도였다(김병수, 2017). 이에 세금이 난민정착비용으로 이용되어 스웨덴 복지 시스템이 위태로워진대거나, 무슬림이 스웨덴 인구의 반을 장악할 것이라는 등의 허위정보와 가짜뉴스<sup>6)</sup>까지 더해져 스웨덴 국민들의 반(反)난민·반(反)이민정서는 더욱 고조되었다(Regeringskansliet, 2017).

1) Nätshatsgranskaren (URL: <http://xn--nathatsgranskaren-vnb.se/>)

2) 스웨덴 내 소셜미디어 혐오표현 조사기관(Nätshatsgranskaren)의 장 토마스 아베리(Tomas Aberg)에 따르면, 혐오표현관련 범죄의 50%는 무슬림, 22%는 망명신청자, 21%는 아프리카계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었다(Daily Sabah, 2019).

3) 옥기원(2018)에 따르면, 스웨덴은 인구가 약 1천만 명 정도 되는 작은 나라인데,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16만 명이 넘는 난민을 수용해 자국민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는 나라가 되었다.

4) 이영희(2018)에 따르면, 스웨덴 민주당은 2018년 총선에서 2014년 총선에 비해 약 5% 높은 득표율을 보여 제 3정당이 되었다.

5) 스웨덴의 인종차별주의를 반대하는 재단인 엑스포(Expo)가 2017년 발표한 연례보고서(김병수, 2017).

6) 스웨덴은 2015년 난민 위기로 인해 가짜뉴스 또한 성행했다. 2018년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가 성행한 나머지 “유럽에서 가짜뉴스를 많이 공유하는 나라”라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다. 또한 가짜뉴스의 40%가 스웨덴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반난민주의, 반이슬람주의를 조장하는 글이었다(Hedman et al., 2018; “Surge in fake Twitter accounts”, 2018).

## II. 혐오표현에 대한 사법적·정책적 규제

그렇다면 스웨덴은 혐오표현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을까? 스웨덴은 형법(16.8장)<sup>7)</sup>을 통해 “인종, 피부색, 국적, 민족, 종교, 성적 지향, 트랜스젠더”에 기반한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벌금 혹은 최대 2년 징역형”에 처한다(Emma, 2018).<sup>8)</sup> 뿐만 아니라 유럽인권보호조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과 유럽연합(EU)의 형법에 근거해 외국인 및 인종 차별과 관련된 혐오표현과 특정 행동 또한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Catovic, 2014).

법적인 규제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가 끊임없이 개입하고 있다. 먼저 혐오표현 근절을 국가적 과제로 삼고 유럽연합으로부터 총 750만크로나(807,150달러)를 받아 막대한 예산을 할당했다(Harper, 2019). 건강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sup>9)</sup>에 대한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성평등한 시각을 증진시키기 위해 페미니스트 정책과 같은 공공기관의 반차별 교육정책도 전면 시행하고 있다.

스웨덴 국립미디어위원회(Swedish Media Council)에서는 2020년말까지 “노 헤이트 스피치 운동(No Hate Speech Movement)”을 통해 청소년들의 사이버폭력(성차별, 호모포비아, 트랜스포비아, 장애인 비하 발언 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공식 홈페이지(www.nohate.se)에 혐오표현의 정의와 캠페인에 대해 소개하고 교사와 부모가 참고할 수 있도록 ‘교육 가이드 자료집’을 배포했다. 더 나아가 학교 차원에서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교육을 강화해 인터넷상의 혐오표현을 판별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장려했다(Regeringskansliet, 2018; Statens medieråd, n.d.).

또한 스웨덴 경찰은 스웨덴 국방 연구청(Swedish Defense Research Agency, FOI), 읍살라 대학교와 협업하여 온라인 내 혐오표현, 사이버폭력, 인종차별을 일으키는 선동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자동혐오탐지장치(hate-detecting machine)<sup>10)</sup>’를 개발했다. 뉴스메이커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이 알고리즘은 현재 스웨덴어로만 가능하며, 선임연구원들이

7) 스웨덴은 1948년부터 특정 국가 혹은 민족 집단에 대한 선동을 법적으로 금지했다. 시간이 흐르며 집단의 범위는 점차 확장되어 현재의 법이 만들어졌다. 그 중 ‘트랜스젠더’ 항목은 올해 1월부터 추가되었다(Battle of ideas, 2017; Emma, 2018).

8) 스웨덴 형법 16.8장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Emma, 2018). “Any person who, in a statement or in another shared message, threatens or expresses contempt for a community or other such group of people on the basis of race, skin colour, national or ethnic origin, creed, sexual orientation or transgender identity or expression, is convicted of hate speech to imprisonment for a maximum of two years or, if the offence is minor, to a fine. “If the offence is severe, the offender is convicted of aggravated incitement to hatred to imprisonment for a minimum of six months and a maximum of four years.”

9) 대표적으로는 스웨덴의 건강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 ‘스웨덴 인터넷 재단(Internet Foundation in Sweden, IIS)’과 유소년과 청소년들의 안전한 서핑(Safe Surfing)을 장려하고 인터넷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에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퍼뜨리는 ‘Jag är här’ (<https://www.jagarhar.se/>)라는 단체가 있다(Regeringskansliet, 2018).

10) 필자 번역. 웹사이트(<https://hatomaten.com/>) 방문 시, 로봇 모양 아이콘이 “나는 혐오를 먹습니다( eat hate)”, “혐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thanks for your hate)” 등의 인사말로 사람을 맞이한다(Sputnik, 2019).

다양한 혐오표현 샘플들을 이용해 개발 중이다. 스웨덴 국방 연구청(FOI)은 “이 장치를 통해 범 강화를 돕고 특정 개인이나 그룹에 대한 위협 및 폭력 등을 탐지해 좀 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혐오표현 근절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Sputnik, 2019).

〈그림 1〉 스웨덴 국립미디어위원회가 배포한 인터넷상의 혐오표현관련 자녀 교육 가이드.  
우측 하단에서 ‘노 헤이트 스피치 운동’ 로고를 볼 수 있다 (Statens medieråd, n.d.).  
〈그림 2〉 스웨덴 경찰이 공동연구로 개발한 ‘자동혐오탐지장치(hate-detecting machine)’



### III. 혐오표현 규제를 둘러싼 논란

혐오표현을 근절하기 위한 스웨덴의 다양한 노력은 무슬림, 유대인, 난민, LGBT<sup>11)</sup> 등의 사회적 소수집단으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혐오표현 범죄의 대부분이 이들을 겨냥하기 때문에 강력해진 규제가 그들의 인권 신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Chatterjee & Törnkvist, 2018; Daily Sabah, 2019). 특히 시민단체 성평등연합(The Swedish Federation for LGBTQ Rights)은 올해 1월부터 “트랜스젠더 정체성 혹은 표현”이라는 항목이 혐오표현 관련 법에 추가된 것에 대해 “트랜스젠더의 존재와 현실에 대한 인정을 받은 것”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Fria Tider, 2018; Emma, 2018 재인용; RFSL, 2018).

그러나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혐오표현 규제가 국가 기관의 자의적인 해석과 지

11) 레즈비언(lesbian)과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의 앞 글자를 딴 것으로, 성적소수자를 의미한다(pmg 지식엔진연구소, 2017).

나친 규제로 오남용되어 표현의 자유<sup>12)</sup>가 침해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웨덴 정부기관 대외홍보처(Swedish Institute)가 운영하는 공식 트위터 계정(@Sweden)이 급증한 인종차별과 성차별주의자들의 악성 댓글을 관리하겠다는 명목으로 유저 14,000명을 차단한 블랙리스트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논란이 일자 온라인 보안 전문가이자 해당 트위터 계정의 운영자인 비안 타히르(Vian Tahir)는 “혐오표현 규제를 목적으로 이민자, 여성, 성 소수자(LGBTQ)들에게 위협적이거나, 극우주의 혹은 네오-나치즘에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유저들을 차단한 것”이었다며 설명했다. 그러나 이 리스트에 포함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녀가 말한 어떠한 행위에도 연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노엄 촘스키(Noam Chomsky), 이스라엘 주 스웨덴 대사, 빌게이즈 등과 같은 유명인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그 해명은 충분치 않았다(The Local, 2017; RT News, 2017 재인용). 많은 사람들이 한 기관의 임의적인 판단만으로 영문도 모른 채 관리를 당했고 그 리스트가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유출되었다는 것 또한 더해져 더욱 공분을 샀다. 결국 스웨덴 대외홍보처는 공식 사과와 함께 14,000명 유저들에 대한 차단을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나 이미 여론은 싸늘해진 뒤였다. 정치계 논쟁가 로렌 서던(Lauren Southern)은 “정부가 무슨 권리로 개인의 의견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며 블랙리스트의 존재와 목적을 비판했고, 이를 가리켜 “사상경찰(thought police) 또는 전체주의”에 비유하는 시각까지 나오기도 했다(RT News, 2017; Sputnik, 2019).

혐오표현 규제가 다소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었다. 2017년 달라르나(Darlarna)에 거주하는 70세의 여성이 “이민자들이 거리에 대소변을 보고 차에 불을 지른다”라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인종 차별적인 발언으로 기소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법원이 이 여성에게 4년 감옥형을 선고한 반면, 같은 해 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남성을 죽기 직전까지 폭행한 2명의 이민자들에게는 4년 이하의 감옥형을 내려 논란이 있었다. 당시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던 ‘사실’을 적었을 뿐인데 타인에게 물리적 폭행을 가한 중범죄보다 더 심한 형벌을 받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민주주의의 몰락이 시작’됐다는 강도 높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Curl, 2017). 스웨덴의 이러한 행보들은 약 250년 전 세계 최초로 출판언론자유법을 도입해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역사에 큰 선구자 역할을 했다고 평가를 받던 ‘모범적 민주주의의 국가’ 이미지와는 사뭇 거리가 있어 보인다(Carlsson & Weibull, 2018; Catovic, 2014; Regeringskansliet, 2016).

12) 스웨덴에서 ‘표현의 자유’는 크게 헌법(The Instrument of Government), 표현의 자유법(The Freedom of Expression Act), 출판언론 자유법(The Freedom of Press Act) 이 세 가지 법에 근거하여 보장받는다. 각각의 법이 담고 있는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은 “모든 사람은 말, 글, 그림의 형태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정보전달 및 획득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Carlsson & Weibull, 2018; Catovic, 2014; Regeringskansliet, 2016).



## 나가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 성인의 64%가 혐오표현을 경험했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이병훈, 2019). 이에 지난 8월, 법무부는 ‘혐오표현의 확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5회 국제인권심포지엄을 열어 혐오표현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했는데 혐오표현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존 법을 개정해 사법적 규제를 강화하자는 의견<sup>13)</sup>이 주를 이뤘다(강석영, 2019).

그러나 우리는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혐오표현 규제라는 명목으로 어떻게 공권력이 악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법적 규제 강화에 앞서 그것이 불러올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선행했는지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 이미 ‘명예훼손 죄와 모욕죄’, ‘인터넷상 표현에 대한 국가 규제’, ‘준차별금지법’ 등과 같은 표현 및 차별을 규제하는 법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혐오표현 관련 법까지 생겨난다면 ‘위축효과(the chilling effect)’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과도한 공권력을 의식해 표현에 대한 자기검열과 심리적 압박을 느껴 자유로운 토론이 불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결

13) 특히 이수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여성 혐오표현에 대한 문제점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혐오표현금지법’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강석영, 2019).

국 진정한 평등을 위한 혐오표현 규제가 민주주의의 뿌리인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다(백상현, 2018; 한명진, 2017; 최란, 2018 재인용).

혐오표현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어떠한 계기로 인해 사회 전반적인 역사와 구조 속에 오랫동안 깊게 뿌리내렸던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일 뿐이다. 혐오표현 확산의 주 요인으로 “사회에 만연한 구조적 차이(77.4%)”가 꼽힌 것이 이를 잘 설명해준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법적 규제 강화를 논하기 보다는 ‘편견 및 차별’ 해소에 초점을 두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백상현, 2018; 이병훈, 2019; 최란, 2018).

#### 참고문헌

- 1) 강석영 (2019.09.02) '김치녀' '맘충' 여성 혐오표현, 어디까지 처벌해야 할까? <민중의 소리>. URL: <https://www.vop.co.kr/A00001432296.html>
- 2) 김병수 (2017, 5, 7). '네오-나치' 활동 왕성해지는 스웨덴...작년 3천건 넘어. <연합뉴스>. URL: <https://www.yna.co.kr/view/AKR20170507069600098?input=1195m>
- 3) 김현경, 박보람, 박승환 (2012).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그 옹호의 논리를 넘어서: 표현의 자유론 비판과 시민권의 재구성. <공익과 인권>, 12, 215-249.
- 4) 백상현 (2018, 3, 8). ['혐오표현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정당한 표현조차 스스로 입 달을 가능성. <국민일보>. URL: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5&aid=0001079244>
- 5) 옥기원 (2018, 9, 10). 불안 자극한 '난민 공포'...북유럽 복지국가마저 '극우 소환'. <한겨레>. URL: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861490.html>
- 6) 이병훈 (2019, 8, 27). 성인 64% '혐오 표현' 경험...“2030세대 경험 두드러져”. <파이낸셜뉴스>. URL: <http://www.fnnews.com/news/201908271428112209>
- 7) 이영희 (2018, 9, 10). '난민 문제' 이슈 된 스웨덴 총선서 극우정당 약진. <중앙일보>. URL: <https://news.joins.com/article/22955805>
- 8) 최란 (2018). 현행법상 혐오표현의 규제, 특히 명예에 관한 죄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미디어와 인권권>, 제4권 제2호, p.47-86.
- 9) Battle of ideas (2017, November 18) HATE SPEECH AND DEMOCRACY: SHOULD WE TOLERATE THE INTOLERANT?. *Battle of ideas*. Retrieved from <https://www.battleofideas.org.uk/2017/session/hate-speech-and-democracy-should-we-tolerate-the-intolerant/>
- 10) Bergquist, A. (2019, March 27). 91-year-old convicted of Islamism on Facebook. *Lokaltidningen*. Retrieved from <http://www.lokaltidningen.se/2019-03-27/-91-%C3%A5ring-d%C3%B6md-f%C3%B6r-islamhets-p%C3%A5-Facebook-4517470.html>
- 11) Carlsson, U., & Weibull, L. (2018).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Digital Media Culture: A study of public opinion in Sweden*. Nordicom.
- 12) Catovic, E. (2014). A right to hate: A comparative study on the approach to hate speech in the United States and Sweden.
- 13) Chatterjee, P., & Törnkvist, A. (2018, January 3) Rise in online hate speech convictions. *SVERIGES RADIO*. Retrieved from <https://sverigesradio.se/sida/artikel.aspx?programid=2054&artikel=6854360>
- 14) Curl, J. (2017, May 4) Woman, 70, Says Migrants Defecate in Streets, Set Cars on Fire. Cops Charge Her with Hate Crime. *The Daily Wire*. Retrieved from <https://www.dailywire.com/news/16409/woman-70-says-migrants-defecate-streets-set-cars-joseph-curl>
- 15) Daily Sabah. (2019, April 18) Online hate crimes doubled in Sweden in 2017-18, half targeting Muslims: report. *Daily Sabah*. Retrieved from <https://www.dailysabah.com/islamophobia/2019/04/18/online-hate-crimes-doubled-in-sweden-in-2017-18-half-targeting-muslims-report>
- 16) Emma, R. (2018, December 31). New hate speech law in Sweden - From January it will be illegal to speak ill of transsexuals. *The Voice of Europe*. Retrieved from <https://voiceofeurope.com/2018/12/new-hate-speech-law-in-sweden-from-january-it-will-be-illegal-to-speak-ill-of-transsexuals/>

- 
- 17) Harper, C. (2019, April 1). 91-year-old man in Sweden convicted of "hate speech" for his Facebook post. Reclaim the net. Retrieved from <https://reclaimthenet.org/91-year-old-man-in-sweden-convicted-of-hate-speech/>
- 18) Hedman, F., Sivnert, F., Kollanyi, B., Narayanan, V., Neudert, L., & Howard, P. N. (2018). *News and Political Information Consumption in Sweden: Mapping the 2018 Swedish General Election on Twitter*. Data Memo 2018.3, Oxford, UK.
- 19)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7.12.07). 시사상식사전. Retrieved from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968144&cid=43667&categoryId=43667>
- 20) Regeringskansliet (2016, December 2) Pioneering Freedom, Retrieved from <https://www.government.se/opinion-pieces/2016/12/pioneering-freedom/>
- 21) Regeringskansliet (2017, March 20). Så ska vi skydda valrörelsen från andra staters påverkan, Retrieved from <https://www.regeringen.se/debattartiklar/2017/03/sa-ska-vi-skydda-valrorelsen-fran-andra-staters-paverkan/>
- 22) Regeringskansliet (2018, May 4). Action plan: Defending Free Speech – measures to protect journalists, elected representatives and artists from exposure to threats and hatred. Retrieved from <https://www.regeringen.se/informationsmaterial/2018/05/action-plan-defending-free-speech/>
- 23) RFSL (2018, May 18). Sweden adopts hate crime legislation protecting trans people. *RFSL*. Retrieved from <https://www.rfsl.se/en/aktuell/sweden-adopts-hate-crime-legislation-protecting-trans-people/>
- 24) RT News. (2017, May 18). @Sweden Twitter account blocking 14k users is a threat to free speech, activists tell RT. *RT News*. Retrieved from <https://on.rt.com/8c1v>
- 25) Sputnik. (2019, May 7). Swedes Shocked Over 'Orwellian' Hate-o-Mat Supposed to Seek Out Web Abuse *Sputnik news*. Retrieved from <https://sptnkne.ws/mvFf>
- 26) Statens medieråd.(n.d.). Nohate – för dig som vill förebygga näthat bland unga. Retrieved September 3, 2019, from <https://statensmedierad.se/nohate.1295.html>
- 27) Surge in fake Twitter accounts spouting anti-immigrant bile sparks fears of outside interference in Swedish election. (2018, August 30). *Independent*. Retrieved from <https://www.independent.co.uk/news/world/europe/sweden-democrats-twitter-elections-interference-misinformation-immigration-a8514791.html>
- 28) The Local (2019, June 26). Landmark case: Swedish court fines man for not deleting hate speech on Facebook. *The Local*. Retrieved from <https://www.thelocal.se/20190626/landmark-case-swedish-court-fines-man-for-not-deleting-hate-speech-from-facebook-group>



최근 범죄 관련 보도에서  
다양한 인격권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언론중재」 가을호는 '피의자', '취재원', '피해자'  
각기 다른 차원에서 관련 쟁점들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언론보도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 미디어와 인격권

## 제5권 제2호 논문 공모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5권 제2호에 수록할 연구논문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투고 바랍니다.



### 공모분야

#### <연구논문>

표현의 자유, 인격권, 언론윤리, 미디어법제 등 <미디어와 인격권>의 발행 목적에 부합하는 주제 전반 (언론법제 관련 판례평석 포함)

### 응모자격

1. 언론학 및 법학 관련 학회 회원
2. 관련분야의 전문가자격증 소지자 및 종사자로서 해당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 제출마감

#### <연구논문>

논문 제출마감: 2019년 11월 7일(목)까지

\* 제출서류 및 양식 등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제출방법

이메일(journal@pac.or.kr)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를 참고하시거나 연구팀(02-397-3042)으로 문의바랍니다.

\*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입니다.